

〈참고자료〉

# 日本の 對北韓 經濟協力 實態 및 展望

1992. 7

통 일 원  
교 류 협 력 국



본 자료는 日本의 對北韓 經濟協力 推進現況 파악을 위해 일본 一橋大學에 파견 연구중인 産業研究院의 이희두 研究員에게 委囑한 研究報告書로서 南北經濟交流·協力 業務推進의 參考資料로 활용하기 위해 發刊한 것입니다.



# 〈目 次〉

I. 日本의 對外經濟關聯 法令, 制度 및 節次	3
1. 貿易關聯	9
2. 海外投資關聯	16
3. 經濟協力關聯	36
II. 日·北 經濟協力の 歷史 및 現況	45
1. 總 說	47
2. 日·北 貿易의 歷史 및 最近動向	48
3. 日·北 投資交流	54
III. 日·北 國交正常化會談과  관련하여	61
1. 國交正常化會談에 이르기까지	63
2. 兩側의 位相과 協商力	65
3. 事案別 主張 및 展望	67
4. 國交正常化의 時期	72
IV. 日本의 對北進出과  우리의 對應	75
1. 日本의 對北進出 시나리오	77
2. 政策提言	81



## 〈本論에 앞서〉

本 報告書는 향후 예상되는 日本과 北韓間의 經濟交流 擴大에 대비하기 위한 基礎調査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內容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I 部의 日本의 對外經濟關聯 法令, 制度 및 節次는 순수한 資料성격을 갖는다. II 部에서 IV 部까지는 日·北關係에 관한 것으로서 資料성격에 추가하여 分析 및 政策提言이 행해졌다.

위의 두가지는 別途의 報告書로 作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정상 하나의 報告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중점은 II 部~IV 部에 두었으나, 分量은 절반씩 차지하도록 구성했다.

未來에 대한 豫測이나 展望에 관한 내용은 다분히 필자 개인의 편견과 오해의 여지가 많을 것임을 밝혀둔다.





# I. 日本의 對外經濟關聯 法令, 制度 및 節次



## [第 I 部の構成에 대한 양해]

### 〈對外去來關係를 관리하는 法體系〉

日本에는 「外換 및 外國貿易管理法」<sup>1)</sup>이란 法律이 對外去來 전반을 관리하는 基本法律이다. 흔히 「外換法(外爲法)」 또는 「管理法」으로 불린다.<sup>2)</sup>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外換管理法에 해당하는 法律은 따로 없다. 日本의 輸出入去來法(輸出入取引法)이 우리나라의 貿易去來法과 흡사해 보이나 이는 輸出組合 등을 규정한 보조적인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日本의 對外去來를 관리하는 法體系를 圖示한 것이 〈그림 I-1〉이다.

예를 들어 輸出者의 경우는 管理法→輸出貿易管理令→輸出貿易管理規則에 의해 관리되며, 이 밖에 關稅法, 輸出檢査法 등의 관련 法規가 있다. 海外投資者의 경우는 管理法→外換管理令→外換管理에 관한 省令 등에 의해 관리된다.

이상 日本의 法體系를 소개했으나 本 報告書의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앞으로 法令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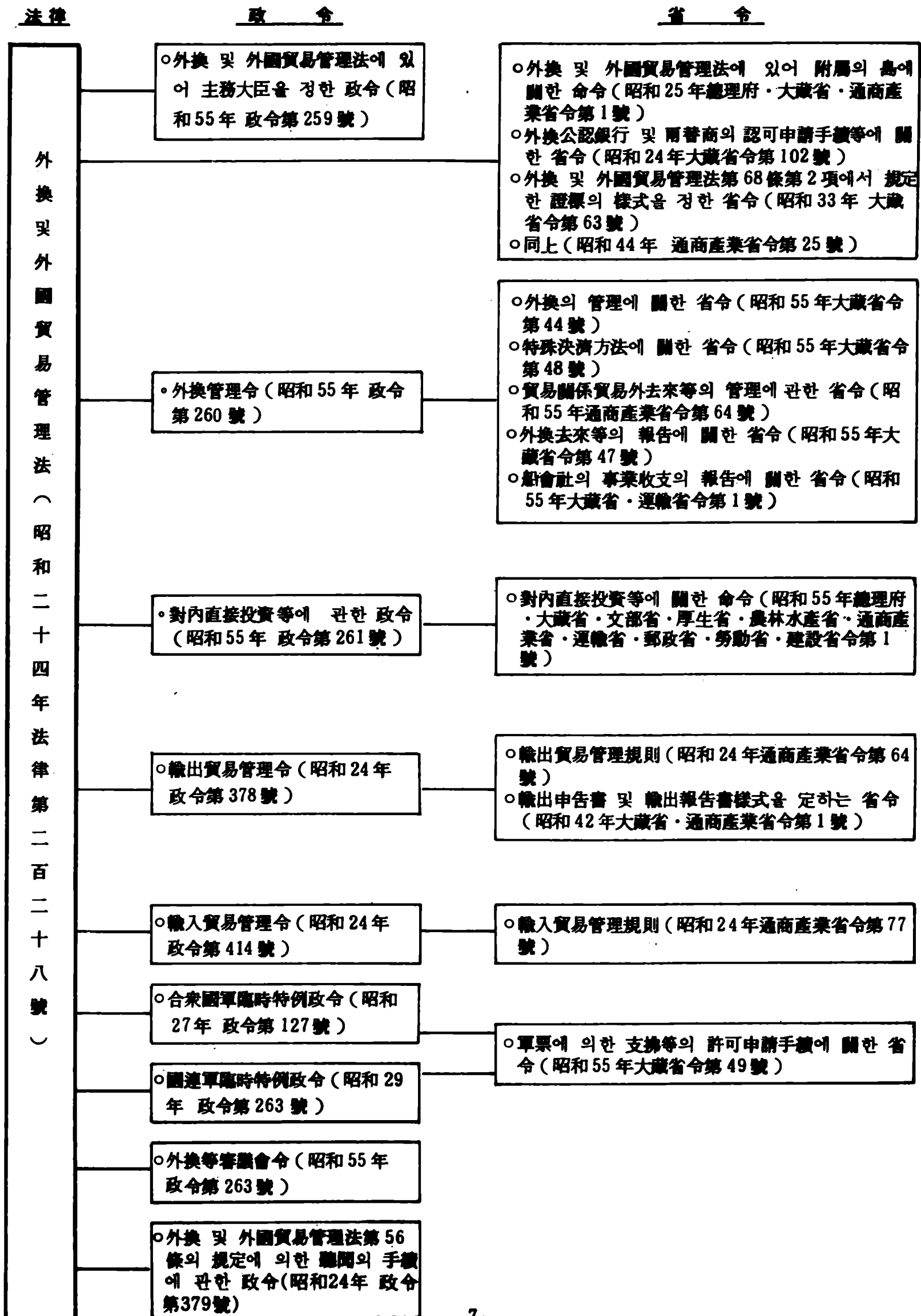
### 〈本 報告書와 관련된 制度 등에 대하여〉

日·北 國交正常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점은 賠償 및 協力→貿易→投資라는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投資關聯에 초점을 맞추되, 經濟協力(援助 및 借款)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貿易에 있어서는 현재 日·北間의 현안문제이면서 동시에 日本의 對北進出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 日本輸出入銀行의 輸出金融(延拂輸出金融)과 貿易保險에 대해서만 언급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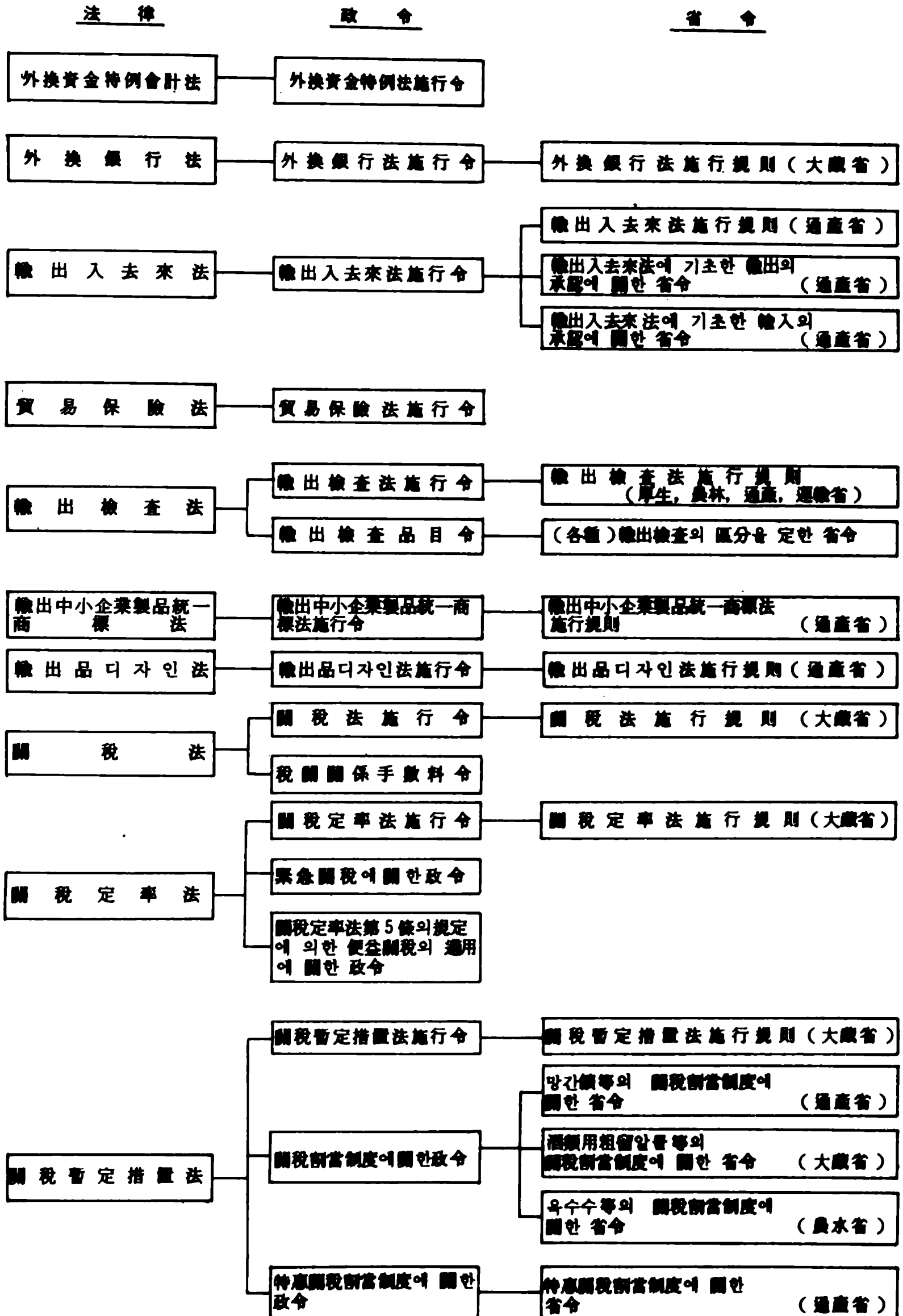
1) 「貿易手續全解」, 貿易弘報社, 1990, pp. 893~905 참조

2) 本稿에서는 管理法이라 부른다.

〈그림 I-1〉 日本의對外法來에 관한 法體系



係法令의 體系)



註： 지면사정에 따라 外換管理令 이외에는 法·政·省令의 番號等의 記載을 省略했다.  
 資料： 貿易手續全解 第32版, 貿易弘報社, 1990.



# 1. 貿易關聯

## (1) 日本 輸出入銀行에 대하여

日本 輸出入銀行(이하 輸銀)은 1950년 「日本輸出入銀行法」에 의하여 설립된 政府系 금융기관으로서 貿易, 投資, 經濟協力の 全分野에 걸쳐 日本企業의 海外進出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설립 당초에는 中長期 輸出金融의 조성이 주목적이었으나 이후 海外投資의 擴大, 貿易黑字와 貿易摩擦 등과 같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輸入金融, 海外投資金融, 外國政府에 대한 直接借款, 出資 및 債務保證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다.

현재 輸銀이 행하고 있는 業務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輸出金融 및 輸入金融
- ② 海外投資金融
- ③ 直接借款
- ④ 債務保證

이하 本節에서는 輸出入金融에 대해서만 살피기로 한다.

## (2) 輸銀에 의한 輸出金融

輸銀의 輸出金融은 용자형태에 따라 다음 2가지로 분류되는데 채무자가 日本側의 공급자인 경우를 서플라이어즈·크레디트, 상대국의 수입자인 경우를 바이어즈·크레디트라 한다.

## 1) 서플라이어즈·크레디트<sup>3)</sup>

### 〈融資對象〉

輸銀法 제18조 1호에는 수출시장의 개척 또는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설비(항공기, 선박, 차량포함) 및 그 부분품, 부속품, 기타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同 2호에서는 技術提供金融의 대상으로서 調査, 設計, 컨설팅, 기술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貸付先〉

「本邦法人」 또는 「本邦人」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日本法에 기초해 설립된 外資系法人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 〈融資條件 등〉

融資形式은 貸付와 어음割引方式이 있으나 통상 證書貸付方式으로 행해진다. 融資金額は 契約金額중 頭金(통상 15% 이내)을 제외한 부분이 대상이다. 輸銀融資는 일반은행과 協調融資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輸銀의 融資比率는 7할이 관례이다. 일반적으로 플랜트는 6~7할, 선박은 6할이다.

金利는 선박을 제외한 플랜트의 경우 통칭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8~10%가 보통이며 融資期間은 3~10년이 많다. 선박에 대해서는 OECD 선박부회가 정한 「船舶輸出信用了解」에 따른다.

상환방법은 보통 반년균등분할상환제로 하며 외국정부 또는 은행의 신용장, 보증장을 담보로서 징수한다.

---

3) Supplier's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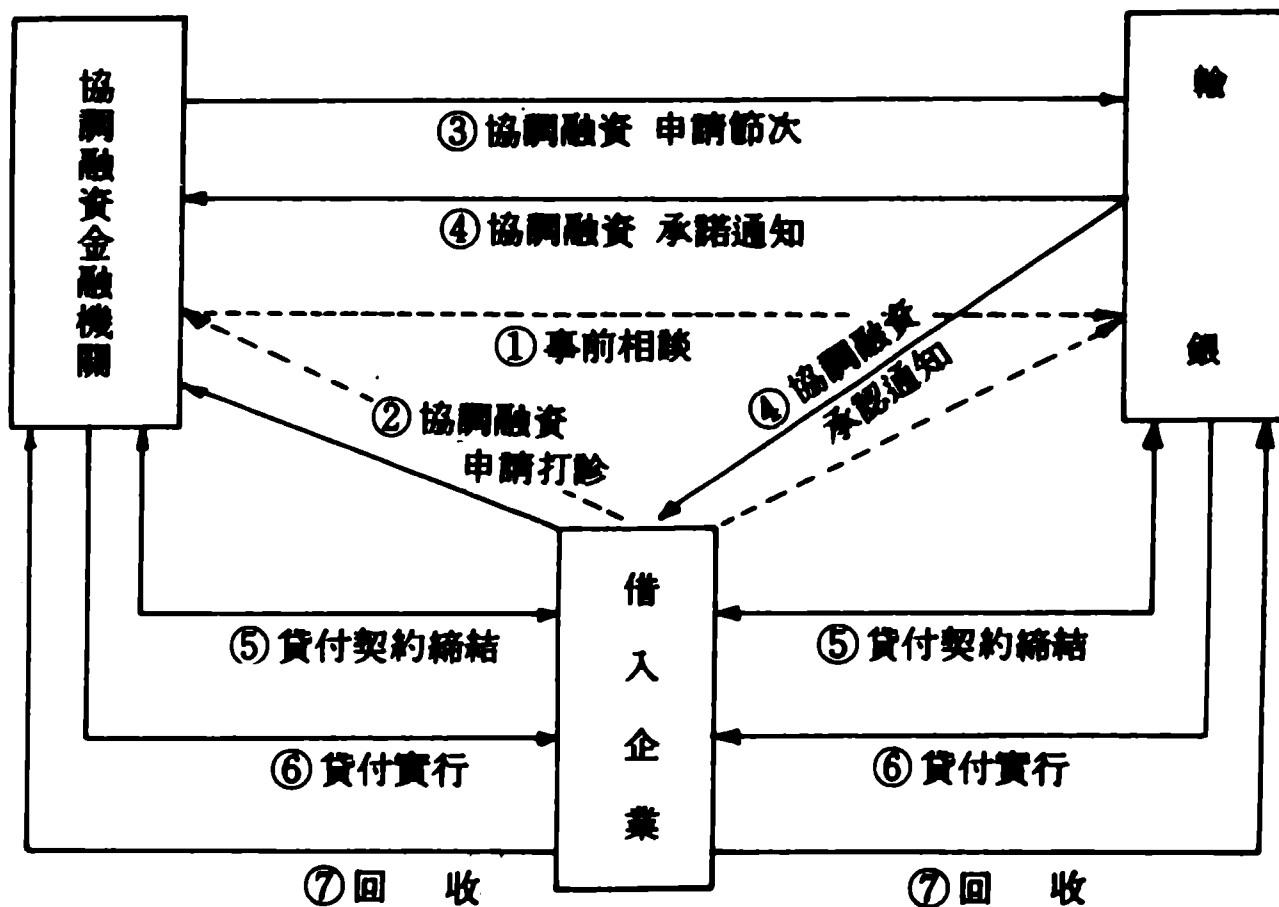
〈融資手續〉

輸銀融資가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I-2〉이다. 우선 輸出融資를 희망하는 수출업자는 수출계약의 내용 등에 관해 輸銀과 協調融資銀行의 사전양해를 얻어야 한다. 또 輸銀融資에 의한 輸出은 「管理法」에서 정한 特殊決濟方式에 해당되므로 通産大臣이 발행한 수출승인장이 필요하다. 또 輸出融資를 받으려면 반드시 輸出代金保險에 가입해야 하며 E/L<sup>1)</sup>을 취득해야 한다.

OECD국가들의 수출신용은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용자기관이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이를 위해 차입자가 輸銀에 제출하는 서류를 「案件登錄」서류라 한다.

이어 通産省의 輸出승인을 받고나면 輸銀에 정식으로 借入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림 I-2〉 輸銀融資에 있어 協調融資 프로세스



註：④~⑦의 수속은 동시에 행하는 것이 원칙임.

資料：前掲書

4) Export License

수은은 심사를 거쳐 용자조건 등을 포함한 용자승락을 내린다. 대부분은 協調融資銀行과 함께 실제로 자금수요가 발생한 때에 실행된다.

## 2) 바이어즈·크레디트, 뱅크론<sup>5)</sup>

두가지 모두 차입자가 外國法人이라는 점은 공통이나 바이어즈·크레디트는 外國의 輸入者인 경우를, 뱅크론은 외국의 금융기관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도 서플라이어즈·크레디트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中小플랜트촉진 뱅크론」만은 특정계약에 한하지 않고 借入銀行이 일정기준에 맞는 輸入者이면 누구라도 공여할 수 있다. 기타 용자대상, 조건, 상환방법 등은 앞서와 거의 비슷하다.

### 〈手續節次〉

외국의 차입희망자가 輸銀에 용자신청서를 내면, 輸銀은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신용조사, 국가위험 등에 관해 심사한다. 이를 통과하면 차입자와 용자금액 등 기본조건을 상의한 후 차입희망자 앞으로 용자조건제시(Preliminary Intention Letter ; P/I 혹은 Financial Offer ; F/O)를 행한다. 이어 양자간에 대부계약서(Loan Agreement)가 체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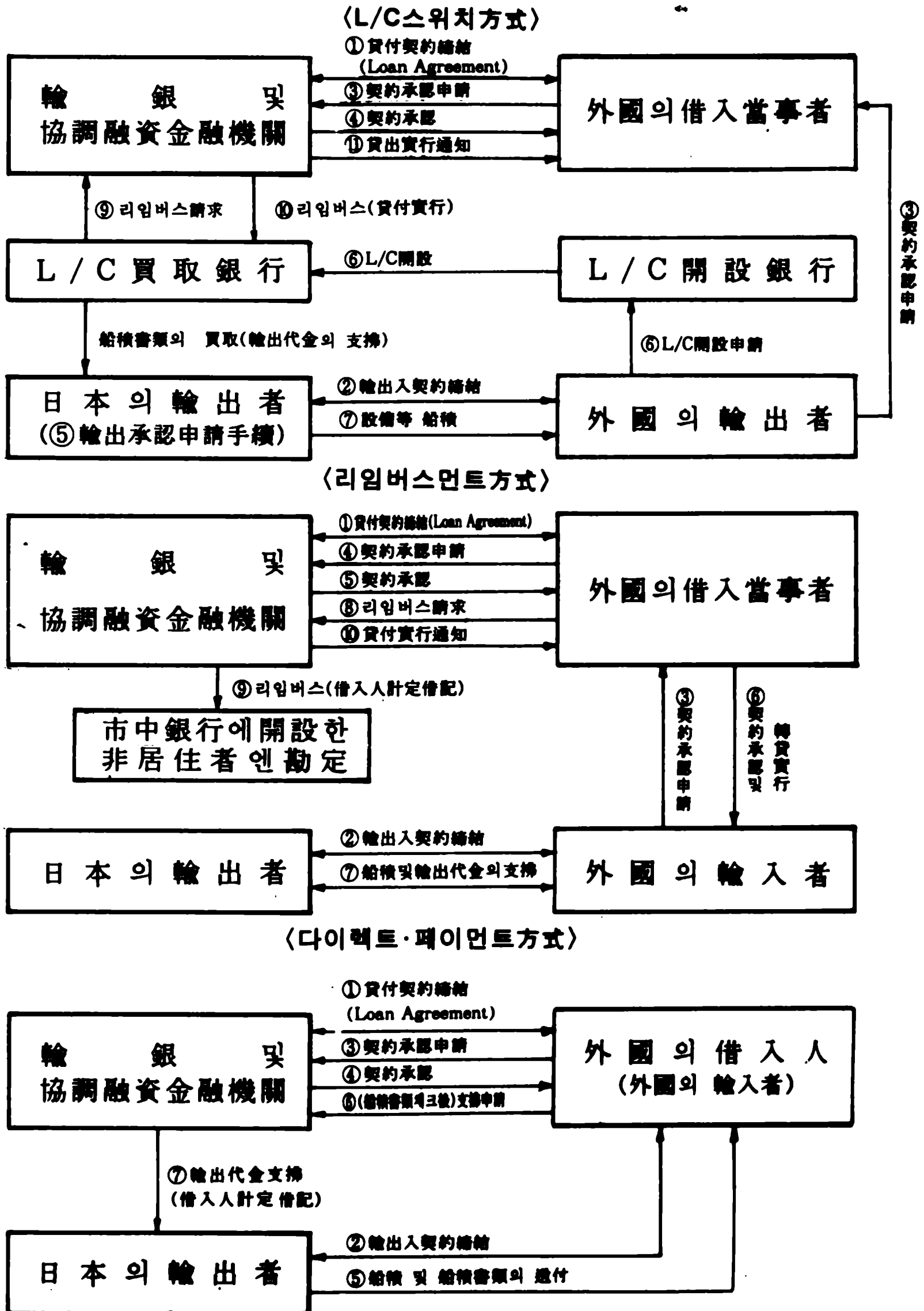
이들 자금에 의한 輸出入契約은 반드시 輸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輸銀은 日本측의 輸出業者, 輸出品目, 價格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승인한다. 한편 이들 거래는 특수결제 아닌 통상결제로 취급되기 때문에 輸出代金保險<sup>6)</sup> 가입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協調銀行은 자신의 용자금액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부가 실행되는 방법은 L/C 스위치방식, 리임버스방식, 다이렉트·페이먼트 방식의 3가지가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그림 I-3〉을 참조하기 바란다.

5) Buyer's Credit, Bank Loan

6) 輸出代金保險에 대해서는 뒤의 貿易保險 참조

〈그림 I-3〉 輸銀 바이어즈·크레디트의 대부실행방법 3種類



### (3) 貿易保險制度

#### 〈概要〉

貿易保險制度란 무역거래에 따른 위험중에서 통상의 민간보험으로서는 카바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通産省 주관)가 담보하는 제도이다. 日本에서는 1950년 輸出信用保險法の 제정과 더불어 시작, 이후 1987년에는 명칭을 현재의 貿易保險法으로 고치고 그 내용을 확충발전시켰다.

#### 〈法體系〉

① 貿易保險法 ; 基本法으로서 貿易保險의 種類, 補轉사유, 補轉比率의 上限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貿易保險特別會計法 ; 무역보험은 政府의 특별회계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그 經理, 會計에 대한 규정

③ 貿易保險施行令, ④ 貿易會計法施行令, ⑤ 貿易保險聽聞手續規則,

⑥ 保險約款 및 契約書, ⑦ 手續細則 등이다.

#### 〈貿易保險의 종류〉

현재 運用되고 있는 貿易保險의 종류는 다음 8가지가 있다.

① 普通輸出保險 ; 非常危險(外換制限, 輸入制限, 戰爭 등) 또는 信用危險(상대방의 파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에 의해 輸出이 不可能하게 된 경우, 非常危險에 의해 輸出代金の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航海, 航路의 변경으로 運賃 또는 保險料(추가비용)를 부담하게 된 경우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

② 輸出代金保險 ; 設備輸出, 技術提供, 銀行의 輸入業者에 대한 貸付를 행한

후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에 의해 수출대금, 기술제공의 代價, 대부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

③ 外換變動保險；設備 등의 外貨表示輸出契約, 外貨表示技術提供契約에 있어 보험 신청일로부터 대금결제까지가 2년이 넘는 경우에 한하며 決濟日 현재의 換率이 契約日에 비해 3%이상 切下되어 발생한 換差損에 대한 보전

④ 輸出어음保險；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발행된 荷換어음이 만기일에 支拂不能이 되어 입는 손실에 대한 보전, 피보험자는 外換銀行이다.

⑤ 輸出保證保險；設備輸出, 技術提供에 있어 外換銀行 또는 損害保險會社가 발행한 保證狀을 해외의 發注者가 부당하게 未收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에 대한 보전, 피보험자는 外換銀行 또는 損害保險會社이다.

⑥ 先拂輸入保險；輸入貨物代金の 전부 또는 일부를 先拂하는 수입계약에 있어 그 先拂금이 비상위험 또는 信用危險에 의해 회수불능이 되어 생기는 손실에 대한 보전

⑦ 仲介貿易保險；日本企業이 仲介貿易<sup>7)</sup>을 행함에 있어 따르는 輸出代金, 임대료, 대부금 등이 비상위험, 신용위험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생기는 손실을 보전

⑧ 海外投資保險；I部 2章 참조.

### 〈保險料率〉

무역보험의 保險料率은 貿易保險令施行令에서 정한다. 保險料率은 基本保險料率과 特別保險料率(상대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A~H까지의 8등급으로 구분, 차별화한 料率)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 〈豫算과 運用〉

---

7) 仲介貿易이란 日本企業이 외국에서 生産, 加工 또는 集荷된 物資를 또 다른 外國에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함.

무역보험은 日本政府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貿易保險特別會計가 설치되어 있다. 매년도 特別會計豫算의 총칙에는 정부가 당해회계연도에 인수할 수 있는 무역보험의 인수상한이 명기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

保險事業의 실제적인 운영은 通産大臣의 소관이며 通産省 貿易局 貿易保險課가 주된 實務部署이다.

### 〈信用調査〉

信用危險을 擔保하는 무역보험의 경우에는 保險契約約款에 무역보험의 引受制限, 또는 成立制限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극히 위험이 높은 海外商社를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수상한을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日本政府는 이와 관련하여 무역보험과 관련이 있는 海外商社들에 대하여 그 信用等級을 기재한 海外商社 名簿를 작성, 電算管理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명부에서 기호B로 기재된 회사는 破産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모든 保險契約이 不可하다.

## 2. 海外投資關聯

### (1) 概要

海外投資란 國際間 資本移動의 한 형태이다. 國際間 資本移動은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의 長短에 따라 長期資本(1년이상 또는 상환기간이 없는 것)과 短期資本(1년이내)으로 분류되고, 長期資本은 다시 直接投資와 間接投資로 구분된다.

간접투자란 투자목적이 배당, 이자 등의 所得을 얻기 위한 것으로 형태는 外國의 公債, 社債, 株式의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長期貸付가 있다. 이에 반해 直接

投資는 投資先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經營 支配할 목적에서 행하는 투자로서 그 형태는 海外 子會社의 설립, 기존 외국회사의 매수, 海外法人에 대한 出資, 母會社의 海外 子會社에 대한 貸付, 海外支店 등의 설치가 있다.

日本에서 海外投資에 관한 基本法은 앞서의 「管理法」이다. 管理法에서는 去來의 형태를 크게 經營去來와 資本去來로 분류하고, 資本거래를 다시 證券取得, 債權取得, 支店 등의 설치, 不動產投資, 預金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의 海外投資란 管理法에서의 資本去來에 속하는데 특히 海外直接投資는 管理法에서 「對外直接投資」라고 부른다.

한편 管理法에서는 技術供與, 파트너십에 대한 出資 등은 經常去來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海外投資의 한 형태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간접투자는 성격상 본 조사와 관련이 희박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절에서는 海外直接投資(管理法상으로는 對外直接投資)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 (2) 對外直接投資

### 〈定 義〉

앞서 설명한 대로 直接投資와 間接投資의 구분은 근본적으로 投資目的의 차이에 의한다. 예를 들어 日本의 한 企業이 北韓企業에 長期貸付를 실시한 경우, 이를 直接投資로 볼 것인가, 間接投資로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를 구분한 것이 管理法 제22조 3항인데 대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① 거주자의 外國法人에 대한 出資로서 出資比率이 10%이상인 경우
- ② 거주자의 출자비율이 10%이상인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1년 이상의 대부
- ③ 다음중에 해당하는 永續的인 관계에 있는 外國法人에 대한 出資 또는 1년 이상의 대부

- 임원파견
- 장기에 걸친 원재료의 공급 또는 제품의 매매
- 중요한 기술의 제공

④ 외국에서의 지점, 공장 기타 영업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관련된 자금 제공

#### 〈對外直接投資에 대한 規制〉

資本거래에 대한 규제는 平常時規制와 有事規制가 있는데 有事規制는 심각한 國際收支의 불균형이 발생해 자본 거래를 許可制로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긴급시에만 적용되며 보통은 平常規制가 적용된다. 平常規制의 종류는 다시 ① 常時許可制, ② 審査要事前申告制, ③ 事前申告制, ④ 申告不要의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對外直接投資는 ②에 해당된다. 審査要事前申告制란 사전에 신고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對外直接投資는 거래실행전에 거래의 내용, 실행시기 등을 大藏大臣(창구는 日本銀行 外國局 또는 各支店)에게 신고해야 한다. 심사기간은 20日로서 法이 규정한 「권고 또는 명령」의 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去來의 變更 혹은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이처럼 資本去來는 원칙 事前申告制에 해당하지만 管理법 제22조1항에서는 거래의 내용 등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相續 또는 遺贈에 따른 外貨證券의 취득과 같이 對價가 없는 去來라든지 3,000萬엔이하의 少額投資는 신고가 불필요하다. 다만 申告不要의 투자라도 만일 그 업종이 大藏省告示에서 지정한 「指定業種」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指定業種 등에 대해서는 大藏省이 個別審査를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漁業 또는 眞珠養殖業, ② 皮革 또는 皮革제품의 製造業, ③ 섬유제품의 製造業 및 加工業, ④ 武器製造業, ⑤ 麻藥 등의 製造業, ⑥ 은행업 또는 증권업의 6가지 업종에 대한 투자,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대외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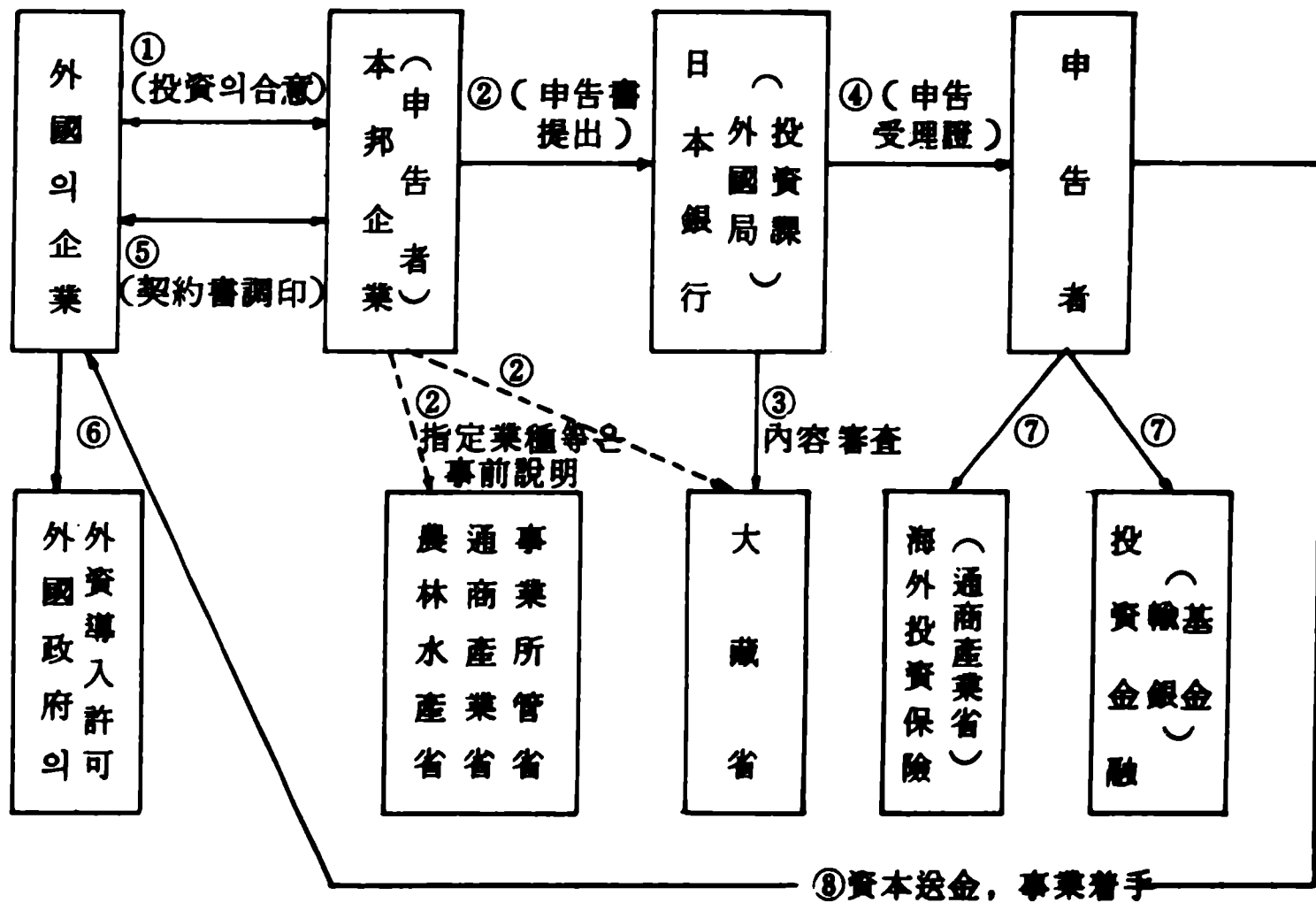


투자, 1件 2,000萬달러이상의 대형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手續節次 및 實施經路〉

〈그림 I-4〉는 日本企業과 外國企業이 投資에 대해 合意한 이후 최종적으로 資本이 送金되기까지의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대외직접투자는 사전신고제에 해당하므로 外國企業과 投資合意가 이루어지면 日本銀行을 창구로 이를 신고하는데 「지정업종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별심사대상안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안건」으로 분류된다. 지정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大藏省 國際金融局과 通産省, 農水省 등 事業所管省에 사전설명을 행한다.

〈그림 I-4〉 海外直接投資의 실시프로세스



資料：前掲書

심사를 통과하면 신고수리증을 교부받고 外國企業과 正式의 投資契約書를 작성한다. 이때는 물론 상대국의 外資導入許可가 필요하다. 또 日本에서는 海外投資의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海外投資金融 및 海外投資保險制度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節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 〈報告義務〉

對外直接投資로 신고한 件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이 發生했을 때 지체없이 大藏大臣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① 外貨證券을 처분한 경우
- ② 대부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 ③ 대부금을 회수 또는 放棄한 경우
- ④ 支店 등을 廢止한 경우
- ⑤ 對外直接投資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
- ⑥ 投資先 外國法人이 해체된 경우

### (3) 日本 輸出入銀行에 의한 海外投資金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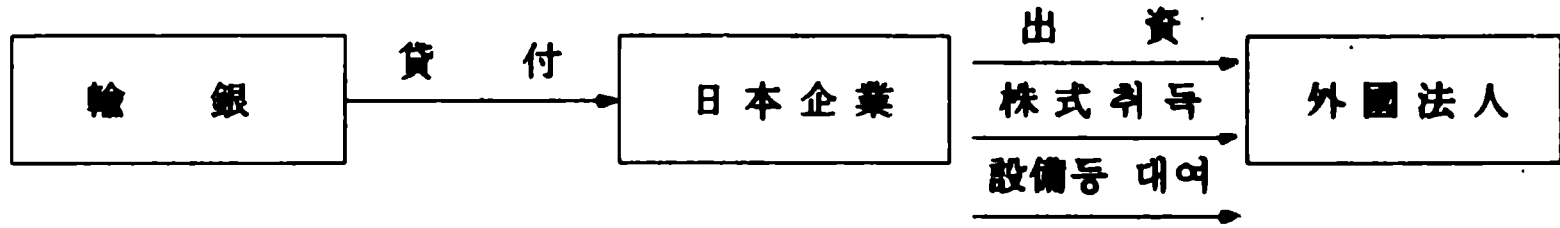
#### 〈概要〉

輸銀의 해외투자금융은 日本企業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확보, 外國企業과의 경제 교류 등을 촉진키 위해 해외투자자금을 대부해 주는 제도이다. 1953년 도입된 이래 수차례의 法改正을 통해 그 범위가 확대·개편되어 왔는데 1985년 6월부터는 일본기업이 출자한 海外合作企業에도 輸銀의 직접용자가 可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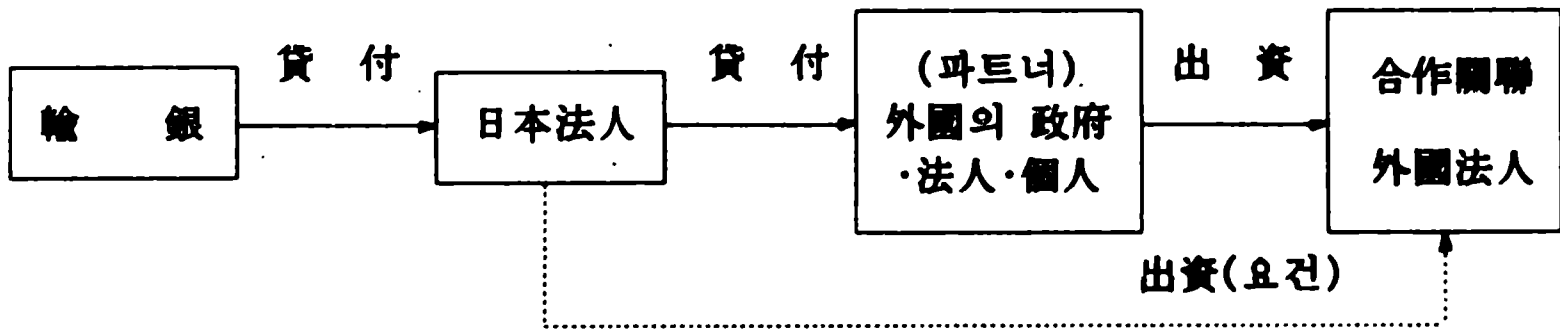
#### 〈融資形態〉

輸銀 해외투자금융의 對象이 되는 자금이란 다음 6가지 形態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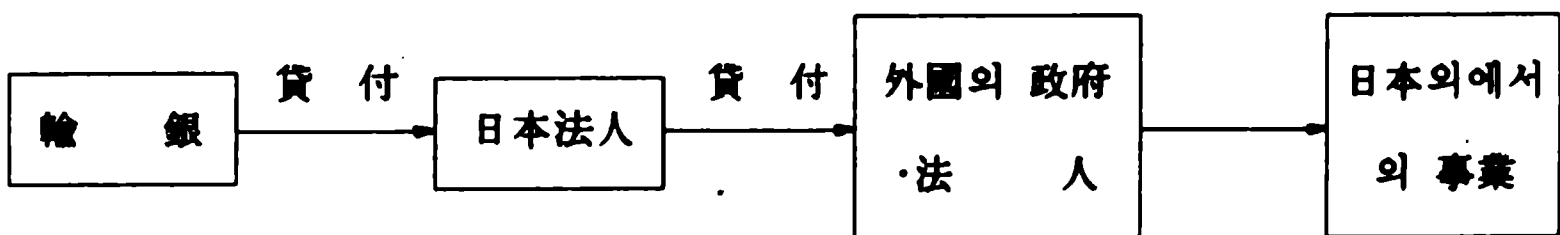
① 外國法人에의 출자 혹은 株式취득, 또는 外國法人에게 設備 등을 대부하기  
 위해 필요한 資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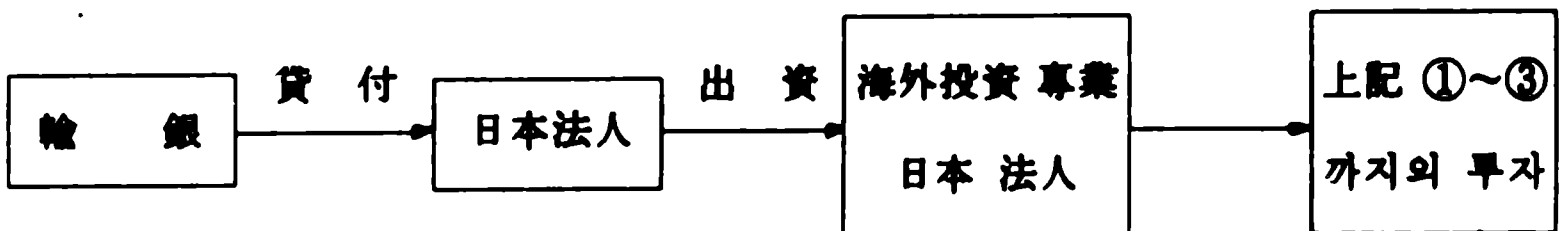
② 外國의 政府, 法人 등이 日本企業이 出資한 外國法人에 출자하는 資金을 대  
 부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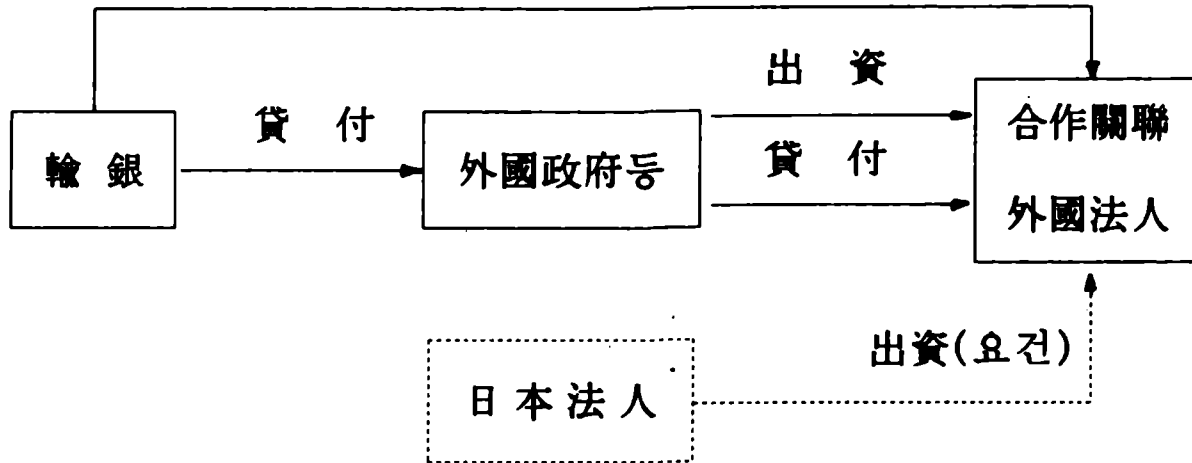
③ 日本法人이 外國의 政府 등이 日本外에서 행하는 사업자금을 장기대부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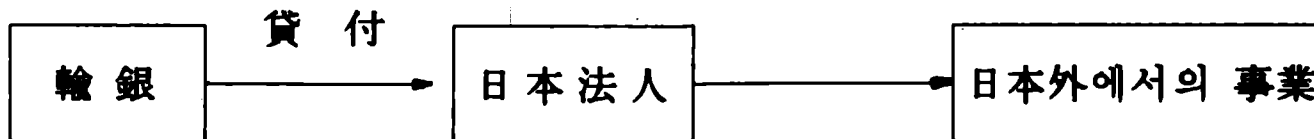
④ 해외투자를 專業으로 하는 日本法人이 위의 ①~③까지를 행하는 데 필요  
 한 資金



- ⑤ 日本법인이 출자한 外國法人이 日本外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대부하거나, 외국의 정부 등이 당해 외국법인에 출자, 대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 ⑥ 日本法인이 日本外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融資對象〉

輸銀 해외투자금융의 대상업종은 資源開發事業과 製造業인 경우가 보통이다. 대상지역은 對開途國뿐만 아니라 對先進國투자라도 상관없다.

〈融資金額 및 協調融資 比率〉

용자금액은 계약금액중 투자에 충당되는 자금, 또는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직접 필요한 장기자금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輸銀의 용자는 一般金融機關과의 協調融資를 하는게 통례이다. 이는 法的인 제약때문은 아니며 단지 信用確保라는 면에서 궁리된 것이다. 이 경우 輸銀의 용자비율은 7할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

칙이다. 흔히 자원개발사업은 7할, 일반투자는 6할인 경우가 많다.

### 〈融資條件〉

金利는 市場金利, 사업의 성격,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對開途國 經濟協力에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는 優待金利가 적용된다.

용자기간은 원칙 1~10년, 다만 극히 예외적이거나 10년을 넘는 경우도 있다. 통상 제조업의 경우는 3~7년이다.

상환방법은 數年거치 분할상환이다. 신규사업인 경우는 계속사업에 비해 거치기간이 길다.

### 〈融資手續節次〉

輸銀의 해외투자금융이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은 ① 事前相談, ② 金融機關, 官廳에의 연락, ③ 輸銀에의 차입신청, ④ 용자결정 및 대부실행의 4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輸銀의 투자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投資案件의 채산성, 안정성 등의 確保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借入希望者는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輸銀은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안전의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

輸銀融資는 協調融資가 통례이므로 借入希望者는 자신의 거래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투자안전에 대한 승락을 받아야 한다. 또 해외투자는 사전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海外送金 20일전까지는 日本銀行 外國局을 창구로 申告書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輸銀에 정식으로 借入申請書를 제출하는데 이 때에는 協調融資銀行의 幹事銀行이 작성한 의견서가 첨부된다.

輸銀은 용자결정이 내려지면 借入者 및 간사은행에게 「協調融資通知書」를 보낸다. 대부의 실행은 자금수요의 발생(해외송금)시에 輸銀과 協調銀行이 동시에 交付한다.

#### (4) 海外經濟協力基金의 投融資

##### 1) 海外經濟協力基金에 대하여<sup>8)</sup>

海外經濟協力基金(이하 基金)은 海外經濟協力基金法(1950년 법률 제173호)에 의해 설립된 政府系금융기관으로서 일본의 對開途國 經濟協力の 중심체이다.

基金은 日本 ODA의 擴充과 더불어 그 組織이 크게 擴張되어 1990年末 현재 資本金은 약 2조 6,860億엔, 임직원수 270명, 13개의 海外 駐在員사무소를 거느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基金보다는 OECF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으며 서울 롯데빌딩에 주재원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 〈業務의 範圍〉

기금의 업무는 크게 政府베이스의 直接借款업무와 民間베이스의 經濟協力を 지원하는 出資·融資業務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흔히 一般案件이라 부른다. 1990년 3月末 현재 基金의 投融資 狀況을 보면 累計額기준으로 直接借款이 약 8조 6,760억엔, 일반안건이 4,351억엔으로서 직접차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금의 직접차관에 대해서는 經濟協力を 다룰 때에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本節에서는 民間投資와 관련된 一般案件에 대해서만 보기로 한다.

---

8) 「經濟協力便覽」, 1991, pp. 119~127 참조  
이밖에는 OECF 年次報告書 등을 참조했음.

## 〈基金과 輸銀의 차이〉

日本企業의 대외직접투자에 대한 融資를 실시하는 政府系금융기관이 基金과 輸銀의 둘로 나누어져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혼란이 초래된다. 또 실제로 과거에는 두 기관이 業務領域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1975년 7월 업무조정제에 관한 覺書가 교환되기도 했다.

현재 해외투자금융에 대한 담당기관은 原則적으로 輸銀이며, 基金은 對開途國 開發事業 중 輸銀의 용자가 곤란한 경우에만 용자가 가능하다. 基金과 輸銀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① 原資의 차이 : 기금은 一般會計로부터의 出資金, 資金運用部로부터의 借入金, 政府保證基金債券의 3가지를 原資로서 운용된다. 輸銀은 産業特別會計로부터의 出資金, 자금운용부로부터의 차입금을 원자로 운용된다. 따라서 기금의 경우가 資金조달 코스트가 낮고, 대부조건도 유리하다.

② 目的의 차이 : 기금은 개도국의 산업개발, 경제안정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투자로서 통상의 금융베이스로는 용자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수은은 무역을 중심으로 개도국, 선진국을 불문하고 외국과의 經濟交流에 필요한 사업을 담당한다.

## 2) 基金의 貸付

### 〈對 象〉

기금의 대부대상은 농림수산업, 광업, 개발사업으로 나뉘어진다. 농림수산업의 경우는 재배, 사육, 植林, 養殖 등의 사업으로 이들 생산물의 1차 가공단계까지가 용자대상이다. 광업의 경우는 開發여부가 결정되는 시점까지의 探鑛事業에 한한다. 開發사업의 경우는 ① 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따른 비용과 ② 준비조사자

등금의 두가지가 있는데, 前者는 리스크가 큰 사업의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금 이, 後者는 開途國의 개발사업을 발굴·수주하려는 조사, 해외컨설팅협회의 차입 보증을 받은 안건, 직접차관공여에 따른 準備調査資金이 용자대상이다.

#### 〈貸付比率 등〉

기금의 대부비율은 보통 소요자금의 70% 정도이며, 利率은 기금의 基準金利 (4~5%)에 사업내용, 상환기간 등을 고려한 스프레드가 가산된다. 상환기간은 원칙 20년 이내, 상환방법은 분할상환과 정기상환이다. 또 5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둔다. 기금은 담보로서 차입자에게 유가증권,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한다.

#### 〈기 타〉

基金은 개발사업의 株式引受 등을 통해 해외투자에 직접 참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금의 출자는 그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내용이 극히 중요하고, 기금의 직접출자 없이는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 기금의 대부대상으로는 日本企業뿐만 아니라 日本法人이 출자한 外國法人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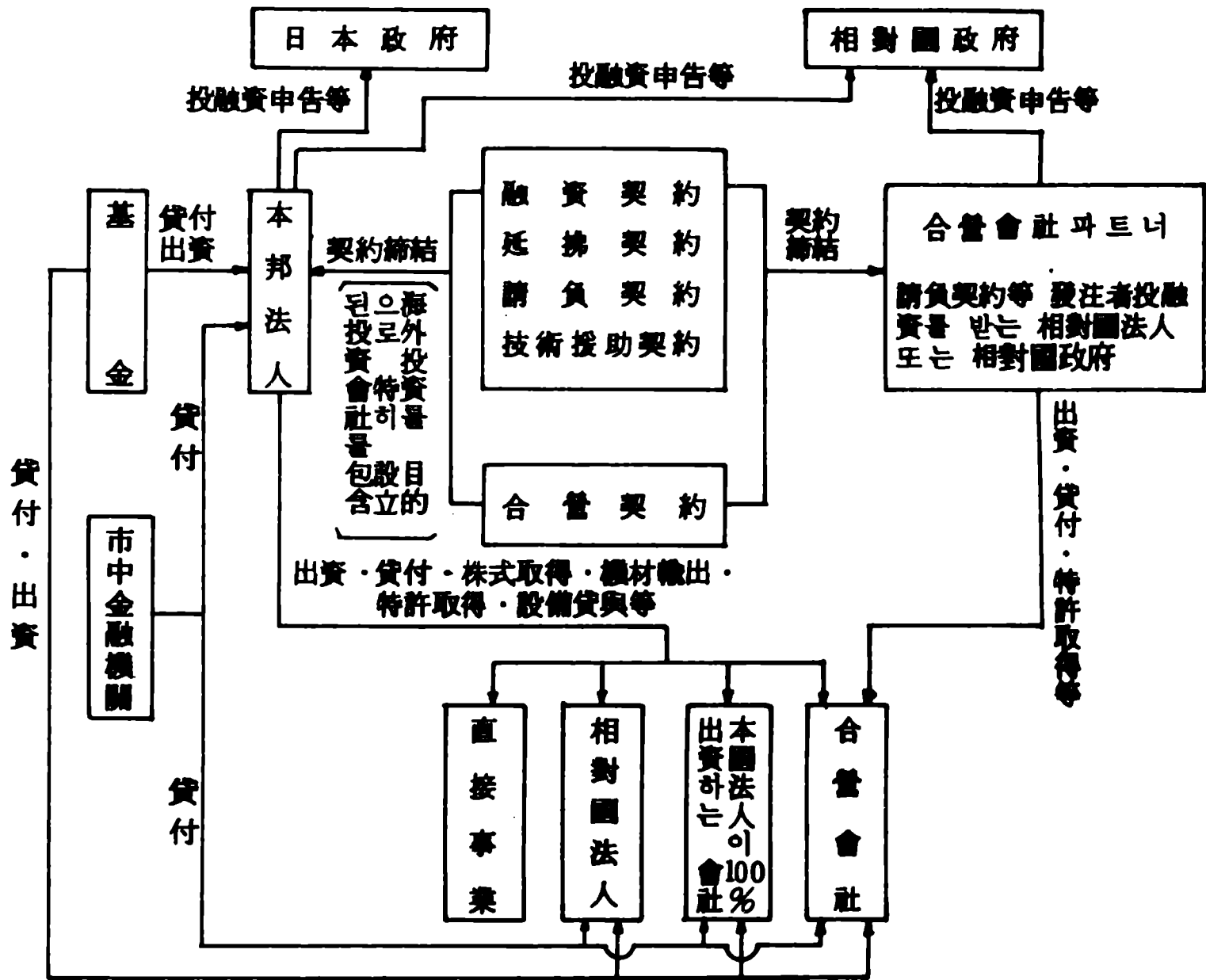
#### 〈手續節次〉

기금의 대부가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은 輸銀용자의 경우와 大同少異하다.

이상 기금의 대부를 중심으로 한 民間의 해외투자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I-5〉 基金資金을 이용한 民間投資



資料：前掲書

## (5) 國際協力事業團의 投融資

### 1) 國際協力事業團에 대하여<sup>9)</sup>

國際協力事業團(이하 事業團)은 開途國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1974년의 국제협력사업단法에 기초해 설립된 政府關係機關이다. 이 기관은 종래 정부베이스 技術協力の 실시기관이던 海外技術協力事業團(1962년 설립)과 일본인의 移住業務를

9) 「經濟協力 便覽」, 1991, pp. 128~129 참조  
이 밖에는 JICA 年次報告書 등을 참조했음

담당하던 海外移住事業團(1963년 설립)을 통합하여 양기구의 업무를 승계하는 한편 여기에 開途國에서의 開發事業에 대한 投融資업무를 추가해 설립되었다. 이후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들이 추가되어 현재의 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開途國에 대한 정부베이스의 技術協力業務
- ② 青年의 해외협력활동 촉진에 관한 업무
- ③ 開途國의 社會開發, 農業 및 鑛工業의 개발에 부수해 필요한 관련설비의 정비자금 등의 공급
- ④ 중남미 지역 등에서의 해외이주업무
- ⑤ 기술협력을 위한 人材育成 및 확보
- ⑥ 無償資金 協力事業의 실시 촉진업무
- ⑦ 開途國의 대규모 재해 긴급원조업무

이상의 사업단 업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① 政府베이스의 技術協力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經濟協力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本節에서는 ③에 해당하는 投融資 업무만을 소개한다.

참고로 1990년 현재 사업단의 定員은 1,030명으로 이중 210명이 49개에 달하는 해외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다. 사업단의 예산은 국제협력사업단 交付金, 국제협력단 출자금 및 通産省으로부터의 국제협력사업단 受託費로 구성되어 있는데 90년도 예산규모는 약 1,251억엔, 여기에 無償資金協력을 합하면 약 2,582억엔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이카(JICA)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데 91년도까지 약 5천명에 달하는 한국의 연수생을 받아들였다.

이상 사업단의 성격에서도 알필 수 있듯이 사업단의 투융자업무는 비교적 비중이 약한 편이며 본 조사와의 관련면에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간략한 소개에 그치기로 한다.

## 2) 事業團의 投融資業務

### 〈融資業務〉

사업단의 용자업무는 아시아 등 개도국 지역에서 행해지는 開發事業 가운데 사회개발사업, 농림업개발사업, 광공업개발사업에 관련된 「關聯施設整備事業」과 「試驗的 事業」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輸銀 및 基金으로부터의 용자가 곤란한 경우에 행해지는 용자를 말한다.

### 〈關聯施設 整備事業에 대한 融資〉

관련시설 정비사업이란 개발사업에 부수해 필요한 시설로서, 地域開發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 병원, 우체국과 같은 주민복지시설, 도로, 항만, 上下水道 등 社會間接資本 등이다. 사업단은 이들 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長期, 低利로 용자한다. 利率은 1%미만이며, 상환기간은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이 보통이다. 담보로서는 日本의 輸銀, 基金, 石油公團 등의 保證을 요하며 필요에 따라 物的 擔保를 要求하기도 한다.

### 〈試驗的 事業에 대한 용자〉

試驗的 事業이란 開發사업중 시험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自然條件 등에 적합한 기술의 개량 또는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農作物의 재배, 가축사육, 造林 등이다. 용자조건 등은 앞과 거의 동일하다.

### 〈投融資에 關한 調查 및 技術指導業務〉

사업단은 무용자업무와 관련하여 무용자의 대상사업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日本人 또는 日本法人의 요청에 의거 조사 및 技術指導를 행한다. 이는 성격상 本章에서 다루는 投資보다는 다음 章에서 다루는 經濟協力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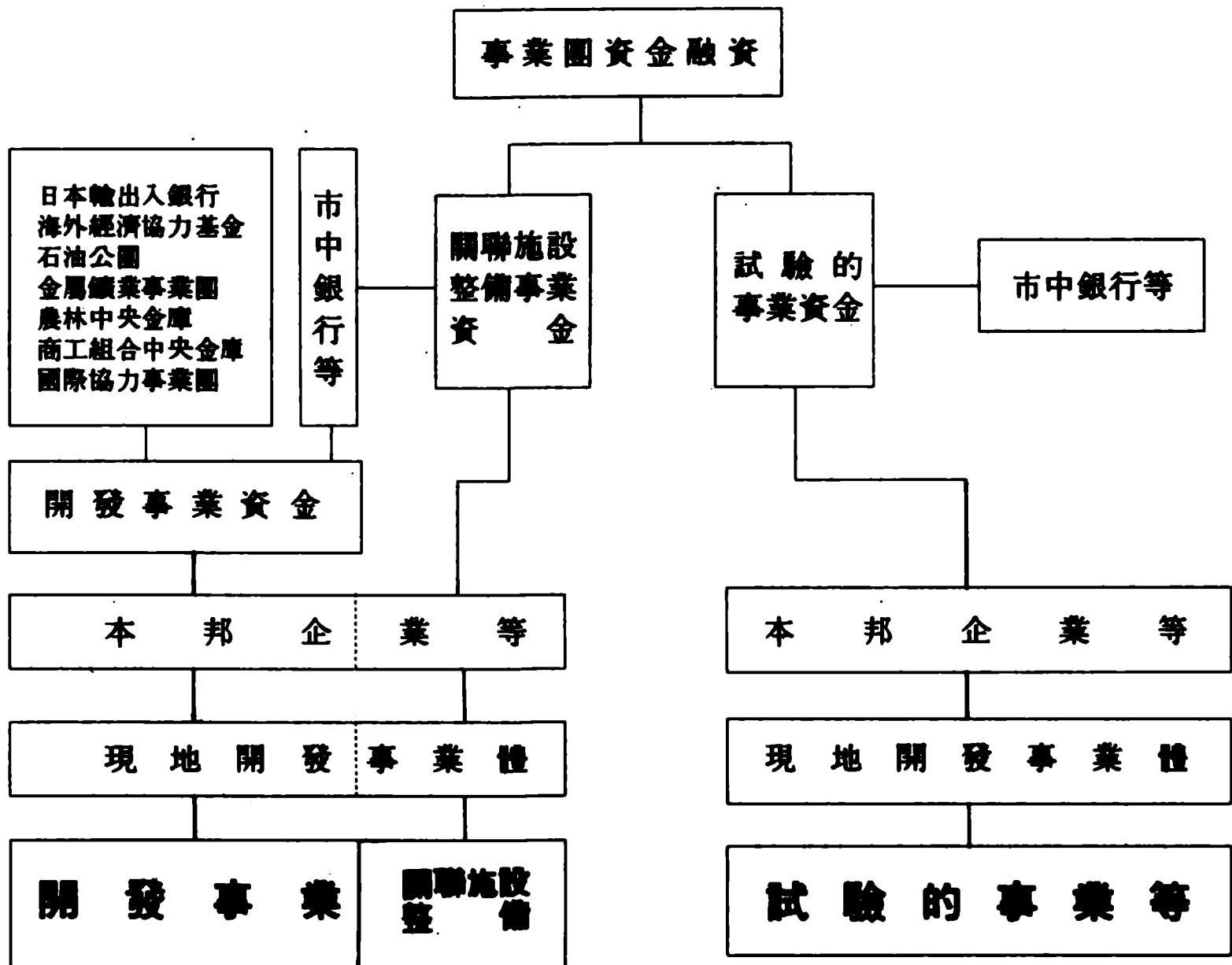
되는 사항이나, 投融資와 일체가 되어 행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언급한다.

먼저 調査는 앞서의 關連시설정비 등에 따른 기초조사, 시험적 사업에 따른 기초조사가 있는데 어느 것이든 사업단이 전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업의 基本計劃을 작성한다.

기술지도는 日本에서 現地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하는 기술지도와 현지기술자를 일본으로 불러들여 지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상의 사업단에 의한 용자의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I-6>이다.

<그림 I-6> 事業團 용자의 프로세스



資料：前掲書

## (6) 海外貿易開發協會의 海外投資資金 融資制度

### 1) 海外貿易開發協會에 대하여

財團法人 海外貿易開發協會(이하 海外貿)는 經濟協力の 실시를 목적으로 1970년 財團法人 아시아무역개발협회로서 설립되어 72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된 政府系 財團法人이다.

海外貿의 특징은 주로 中小企業의 開途國 진출을 후원하고 있다는 점인데 현재의 업무내용은 아래의 4가지로 요약된다.

- ① 開途國의 産業育成에 도움이 되는 日本 中小企業의 投資를 지원하기 위한 「中小企業海外投資協力資金」의 대부 및 이와 관련한 調査
- ② 개도국으로부터의 1차산품 및 그 가공품의 輸入을 지원하기 위한 「輸入促進資金」의 용자
- ③ 개도국에 대한 專門家의 파견
- ④ 기타 ①~③에 부수된 사업

### 2) 中小企業海外投資協力基金

#### 〈概要〉

同 基金은 海外貿가 日本 中小企業의 開途國 中小企業에 대한 投資資金을 용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따라서 용자대상자는 중소기업자(中小企業近代化法 제 2조의 규정에 의함)에 한하며, 融資對象 프로젝트도 개도국 정부 또는 公的機關의 요청, 장려에 의해 계획된 사업에 한한다.

#### 〈貸付條件 등〉

대부한도는 소요자금의 2/3이내이다. 다만 後發開途國의 사업으로 특별히 필요

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4/5이내이다.

利率은 후발개도국에서의 사업인 경우가 年 2%, 기타개도국에서의 사업으로 輸出을 지향하는 경우는 年 3.5%, 기타는 4%이다.

상환기간은 최장 7년의 거치기간, 최장 20년까지이다. 차입시는 銀行保證이 필요하다.

1988년도 同 基金에 의한 대부실적금액은 약 11억엔(17社)이었다.

## (7) 기타의 海外投資促進 政策<sup>10)</sup>

### 1) 海外投資保險

해외투자보험은 第1章에서 설명한 貿易保險증의 하나로서 해외투자에 따른 收用위험, 전쟁위험, 送金위험(이상 3가지를 非常위험이라 함)과 企業파산, 債務의 이행 지체등과 같은 信用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80年代중반이래 日本企業의 해외투자, 특히 對開途國 投資가 급증함에 따라 日本政府(通産省)는 1988년 6월 컨트리 리스크의 保護範圍 擴大등을 포함한 해외 투자보험의 탄력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키로 하고, 해외투자보험의 내용을 그림을 통해 간략히 보인 것이 <그림 I-7>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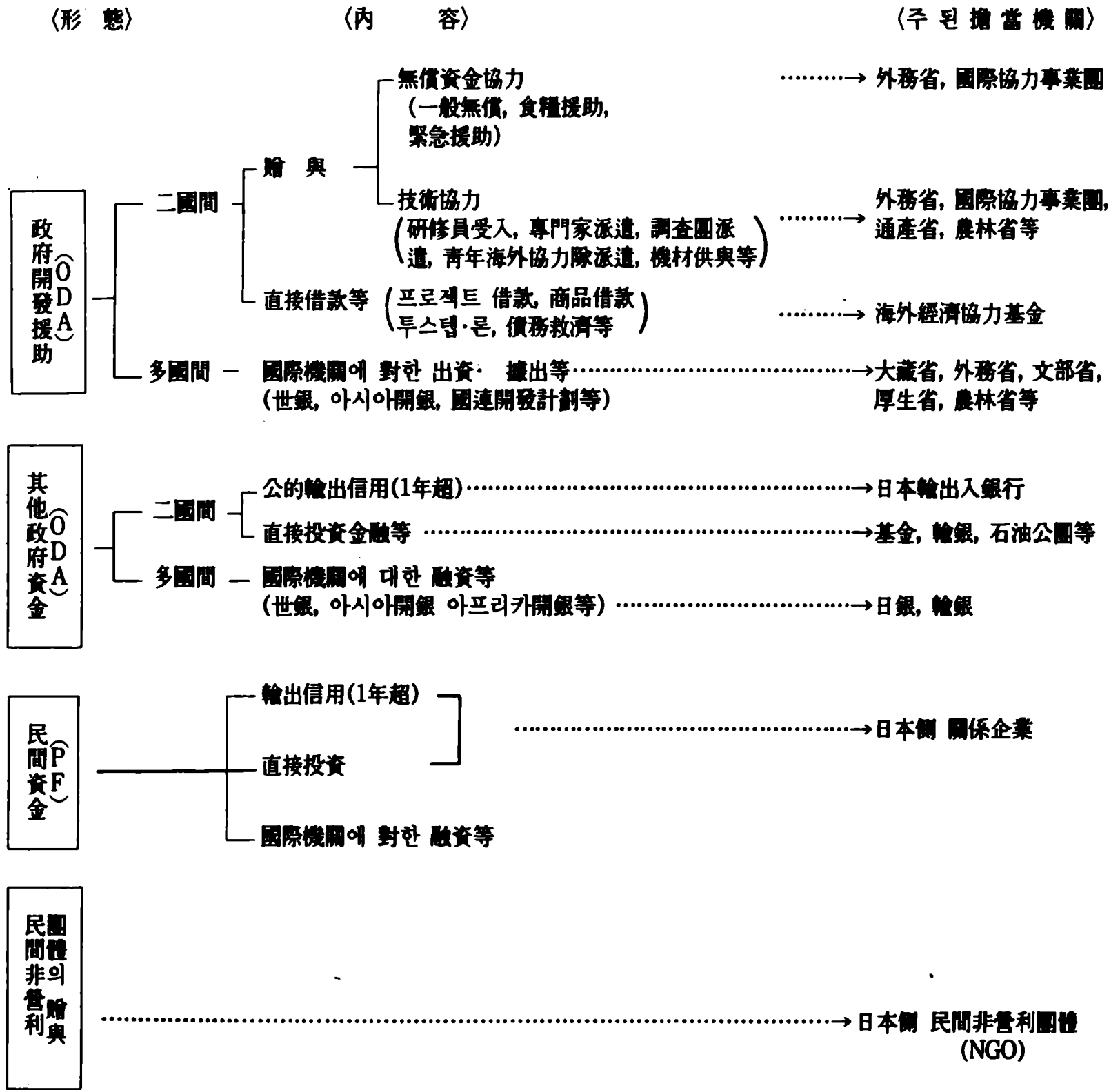
10) 本節의 內容은 주로 「海外 經濟協力의 現狀と 問題点」, 通商産業省, 1990年度版을 참조했음.

〈그림 I-7〉

投資의 내용	구체적인 예
出資	<p>日本法人 → 保險 ↓ 出資 → 外國法人</p>
파트너의 出資 資金の貸付	<p>日本法人 → 出資 → 合作會社          日本法人 → 資金의 貸付 → 합병파트너          합병파트너 → 保險 ↑ 融資 → 日本法人</p>
融資一般 (업종제한은 없음)	<p>日本法人 → 保險 ↓ 融資 → 外國政府·法人</p>
海外直接事業에 제공하는 資産	<p>日本法人 → 保險 ↓ 土地, 建物, 機械, 設備 등 → 海外直接事業</p>
外國政府 및 非經 營支配法人의 資源 開發 輸入의 融資	<p>日本法人 → 保險 ↓ 融資 → 資源開發公社          資源開發公社 → 資源의 輸入 → 日本法人</p>

資料：前掲書

〈그림 I-8〉 海外經濟協力の形態와 日本의 擔當機關



資料：經濟協力偏覽, 海外經濟協力基金編, 1991



## 2) 海外投資關聯 稅制

### 〈海外投資 等の 損失準備金制度〉

企業이 海外投融資을 실시하는 경우, 投資額의 一定比率을 損金처리하여 準備金으로 적립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 내용으로서는 ① 對開途國 투자의 경우는 투자액의 10%(대규모 경제협력안건은 23%), ② 자원개발사업의 경우는 探鑛단계는 투자액의 100%, 開發단계는 40%를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技術等 海外去來와 관련된 所得稅 특별공제제도〉

特許權 등 및 技術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고 얻은 所得에 대해 특별공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控除率은 法人의 과세 총소득의 40%를 한도로 海外거래의 매출액의 일정비율(特許權 25%, 기술서비스 16%)의 소득 특별공제가 인정된다.

## 3) 各種機關들에 의한 支援

해외투자에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輸銀, 基金, 海協貿, 事業團 이외에도 日本의 많은 단체들이 民間投資의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中小企業事業團은 해외주재 경험자의 투자 어드바이스를 비롯, 情報紙, 講演 등을 통해 中小企業者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日本商工會議所도 海外合作 파트너의 알선 및 중소기업의 투자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 日本貿易振興會는 貿易관련정보와 함께 投資관련정보를 수집, 제공한다.

끝으로 日本政府는 피투자국과의 投資保護協定을 체결하여, 收用리스크 등의 정감에 노력하고 있다.

### 3. 經濟協力關聯

#### (1) 經濟協力에 대하여

經濟協力이란 용어는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넓게는 2 國間 혹은 多國間的 貿易·投資 去來, 技術移轉 등을 망라한 포괄적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公式的인 用語로 쓰일 경우는 보통 先進國의 對開發途國에 대한 資金 및 技術의 支援이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OECD의 下部組織으로서 가맹국들의 對開發途國 경제정책의 調整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가 開發援助委員會(DAC)이다. 同 機構는 경제협력에 관한 통일된 지표를 작성키 위해 경제협력을 「개도국으로의 資金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그 形態를 〈그림 I-8〉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일본도 DAC의 기준에 따르고 있음은 물론이다.

本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경제협력중의 無償資金協力(援助)과 有償資金協力(借款)인데 이는 앞으로 日·北經濟交流에 있어 막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흔히 先·後進國間的 經濟交流關係를 援助→借款→直接投資의 단계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日·北經濟는 國交正常化를 계기로 이런 식의 진전을 보일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北韓은 日本과 國交가 단절된데다 日本政府의 對北韓 봉쇄정책 가담으로 인해 日本의 經濟協力 對象國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 (2) 一般無償協力

### 〈概要〉

일반무상협력은 政府베이스 무상협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90년도 현재 日本의 일반무상협력 증여약속 누계액은 1兆엔을 넘어섰다. 對象地域은 아시아 (47.1%), 아프리카(36.9%), 중남미(6.2%) 등의 순이다.

一般無償援助의 내용은 의료 서비스센터의 설립, 수송력 증강계획, 학교 설립, 어업 진흥계획, 醫療, 保健, 教育, 研究, 農業, 環境改善, 交通分野 등이 중심이며 특히 後發발전도상국에 중점적으로 공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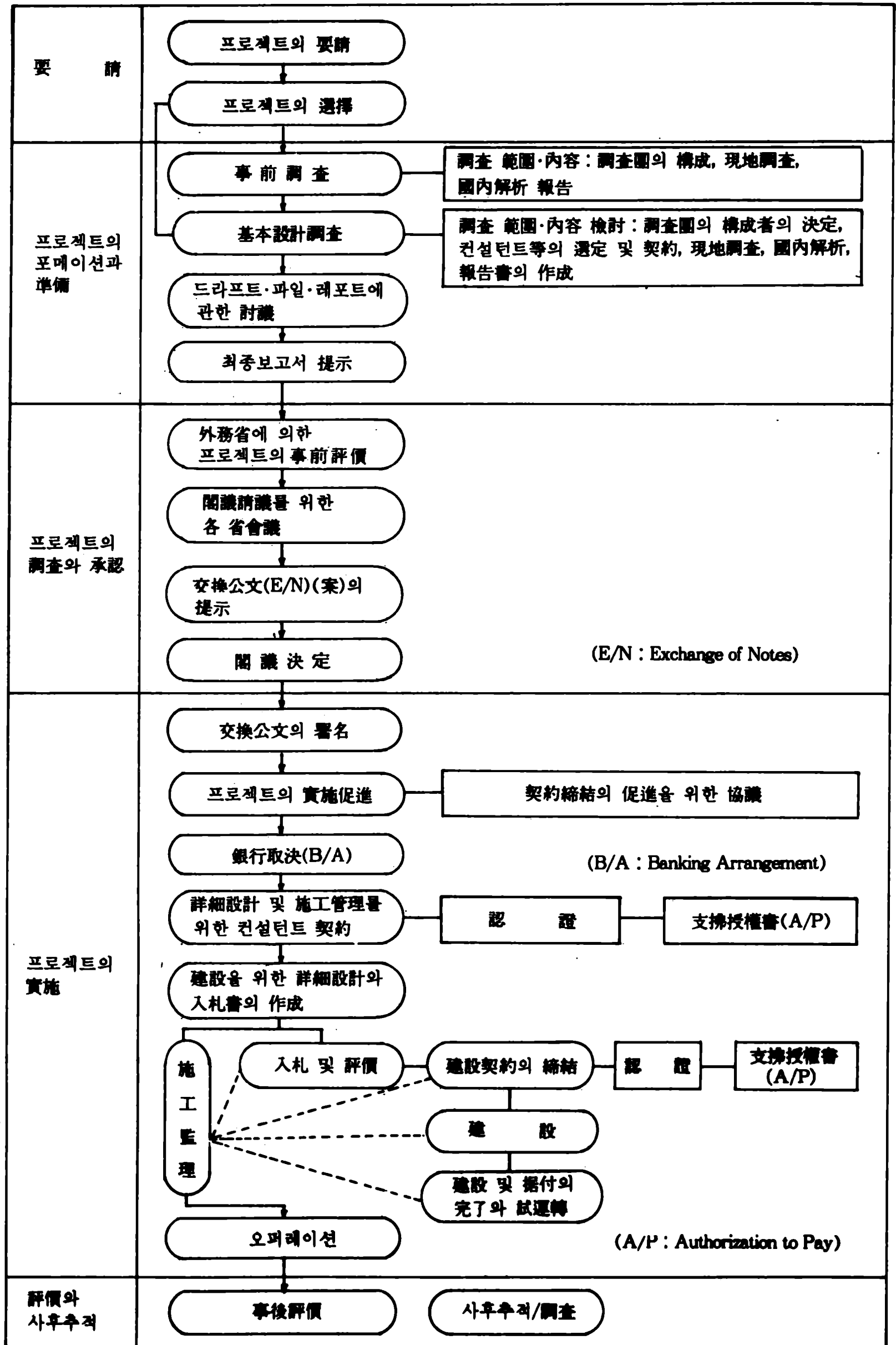
참고로 대북한 실적이 한건도 없음은 물론이며 대남한 실적은 1971년의 금오 공고설립에서 78년의 지역사회의학센터用 의료기자재의 공여까지 누계액 4,187 百萬엔이 공여되었다.

### 〈手續節次〉

一般無常援助는 형식상 상대국의 要請主義와 「交換公文」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一般無常援助가 실행되기까지의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I-9〉인데 간략화하자면 상대국의 요청→심사 및 결정→교환공문 서명→실행의 순이다. 日本側 담당기관은 外務省인데 프로젝트의 調査에 대해서는 日本 經濟協力事業團이 담당한다.

무상협력은 엔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協力資金에 의한 物資의 구입은 日本企業에 한정된다.

〈그림 I -9〉 無償資金援助의 실시프로세스



### 〈一般無償協力에 기초한 輸出〉

피원조국이 일본의 無常協力資金으로 물자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약이 따른다.

- ① 일본측 계약당사자는 日本人 또는 그 지배를 받는 日本國의 법인에 한한다.
- ② 구입계약은 엔貨表示로 한다.
- ③ 계약에는 日本政府의 認證이 필요하며 認證에 의해서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대금지불은 支拂授權書(또는 信用狀) 方式으로 한다.

### (3) 기타의 無償援助

무상원조에는 앞의 一般無償援助 이외에 다음에 소개하는 8종류가 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관계로 간략히 적는데 그친다. 다만 채무구제 무상협력은 현재 日·北 국교정상화의 현안문제인 북한의 대일채무문제와도 다소 관련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水産無償協力〉

수산업의 진흥, 어업자원의 개발에 대한 원조이다. 내용은 어업조사船, 어업훈련船, 간이냉장고, 製氷機 등의 공여, 水産가공센터, 양식장, 어업기지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한다.

#### 〈文化無償協力〉

문화 및 교육의 개발진흥, 문화재 및 문화유적의 보존활용 등을 위한 기자재의 증여 등이다.

### 〈KR食糧援助〉

日本은 食糧援助規約에 의거 年間 30萬톤 상당의 食糧원조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한편 이 규약은 케네디라운드의 합의에 따른 國際穀物協定(1967年)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KR食糧원조라 불린다.

### 〈食糧增産援助〉

개도국의 食糧증산에 대한 自助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이다. KR食糧원조의 내용은 쌀 등의 현물 증여인데 반해 이것은 비료, 농약, 농기구 등 食糧增産에 필요한 물자이다.

### 〈債務救濟無償協力〉

開途國의 누적 채무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시되는 원조이다. 후발개도국과 석유 사태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여액은 1978년 이전에 공여된 엔차관증 반채기일이 도래한 元利金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덧붙여 이 채무무상원조액은 피원조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에 기여하는 一般商品의 구입에 충당된다.

### 〈外換基金 각출〉

IMF의 권고에 따라 특정국(라오스, 캄보디아)의 외환안정기금을 위해 각출한다.

### 〈논·프로젝트 無償資金協力〉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에 대한 긴급조치로 1987년 5월부터 실시된 원조이다. 자금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

## (4) 엔借款(有償協力)

### 〈概要〉

엔차관은 흔히 ODA라 불리는 政府開發援助의 核心을 이루는 것으로서 日本정부가 對開發途國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다. 規模도 80年代 후반부터 급속히 팽창하여 1988년부터는 매년 1兆엔 이상이 공여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70.1%), 중남미(11.9%), 아프리카(8.0%)의 순인데 無償援助에서 아프리카가 약 37%를 차지하고 있던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엔차관을 담당하는 기구는 經濟協力開發基金(基金)이며, 直接借款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直接借款중에서는 일부 輸銀에서 擔當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節을 바꾸어 說明한다.

### 〈엔借款의 種類〉

엔借款은 우선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區別된다.

① 프로젝트 借款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借款으로서 가장 오래되고 支配的인 형태이다. 엔借款 전체의 약 60~70%를 차지한다.

② 엔지니어링·서비스 借款 : 프로젝트의 調査, 設計 등 실행단계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借款이다. 統計상으로는 프로젝트 借款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③ 리헤빌리 借款<sup>11)</sup> : 老朽化등으로 효율이 떨어진 기존의 設備, 施設, 인프라 등의 보수, 개체에 필요한 資金

④ 構造調整 借款 : 借入國의 종합적인 經濟政策 改善, 制度改革 등에 필요한 資金

⑤ 섹터調整 借款 : 구조조정차관중 特定섹터가 지정되어 있는 借款

---

11) rehabilitation

⑥ 섹터·프로그램 론 : 2國間 베이스로 開途國의 重点섹터 開發을 위한 商品借款을 제공한 후, 그 상환액을 다시 특정섹터에 공급하는 借款

⑦ 開發금융 借款 : 中小規模 프로젝트 육성을 위해 借入國의 開發金融機關에 제공되는 차관, 중간에 차입국의 금융기관이 개입되므로 Two Step Loan이라고도 함.

⑧ 섹터·론 : 특정섹터의 개발계획에 필요한 기자재 조달자금에 대한 借款

⑨ 商品 借款 : 國際收支 위기의 완화, 인플레이 억제 등을 위해 特定商品에 대한 輸入資金을 대상으로 공여되는 借款

한편 엔차관은 借款資金에 의한 物資調達先 制約여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되기도 한다.

① 타이드·론 : 調達先을 차관공여국(日本)에 한정

② 언타이드·론 : 一般 언타이드·론은 조달선에 아무런 制約이 없는 경우, LDC 언타이드·론은 日本이외에는 반드시 開途國地域에서 調達해야 하는 條件이 따른다.

#### 〈엔借款의 手續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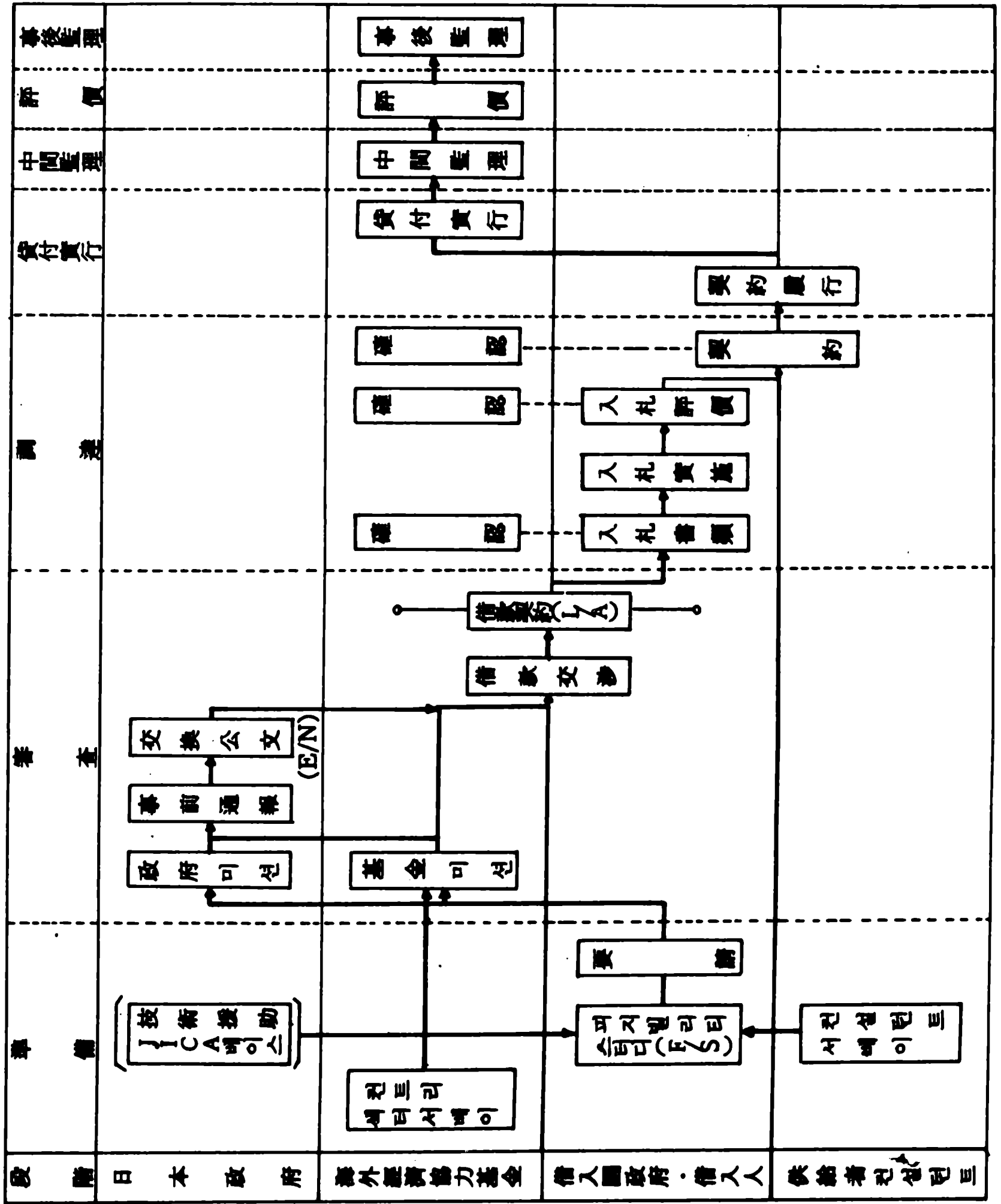
〈그림 I-10〉은 엔차관이 실시되는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간략화하면 準備 → 審査 → 實行의 순인데 이하 그 절차를 설명키로 한다.

우선 프로젝트의 책정은 개도국정부 자신이 부분별 개발계획을 입안·결정하는 과정에서 행한다. 이때는 經濟的·技術的 타당성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F/R(Feasibility Report)이라고 한다. 다만 개도국이 능력이 없을 때는 日本의 國際協力事業團(JICA)에 無償技術協力を 요청할 수 있다.

실행가능성 조사가 끝나면 開途國 政府가 실행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자금을 日本政府에 요청한다. 창구는 현지주재 일본대사관이다. 이 때는 앞서의 F/R과 事業實施計劃書(Implementation Program : I/P)를 제출한다.



〈그림 I -10〉 연借款의 실시프로세스



협력요청을 받은 일본 外務省은 엔차관 關係省廳(大藏省, 通産省, 外務省, 經濟企劃廳, 이상 4곳을 經濟協力關係 4省廳이라 함)과 협의한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는 農水省, 運輸省 등도 참가한다. 여기서 OK 決定이 내려지면 日本政府와 借入國 政府間에 차관액, 용도, 금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환공문(E/N)이 체결된다. 이를 토대로 基金은 事業遂行 可能性 등을 審査한 후 相對國 政府와 貸付契約(Loan Agreement : L/A)을 체결한다. 이 계약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借款供給者 : 基金
- ② 借入人 : 개도국 정부 또는 政府機關, 事業主體. 다만 借入人이 政府이외인 경우는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
- ③ 借款 金額 : 엔貨表示로 한다.
- ④ 借款 用度 및 조건 : 용도는 타이드·론인가, 언타이드·론인가에 따라 정해진다. 金利는 年 1.25~5.75%, 상환기간은 17~30년, 거치기간 5~10년인 것이 보통이다.
- ⑤ 輸入者와 供給者 : 수입자는 프로젝트 차관이면 사업 실시자, 商品借款이면 의화할당을 받은 民間 輸入業者이다. 또 공급자는 調達適格國(Eligible Source Countries)에 한한다.
- ⑥ 대부 실행방식 : 基金이 借入者에 대신해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코미트먼트 方式)과 借入者가 供給者에 먼저 지불한 후 基金이 借入者에게 대부하는 방식(리임버스먼트 方式)이 있다.

#### 〈엔借款에 의한 輸出〉

日本企業이 엔차관을 이용, 수출하는 경우는 통상거래에 비해 다음 몇가지 제약이 따른다.

- ①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物資일 것, 또 調達適格國의 생산물일 것.
- ② 결제통화는 엔貨表示일 것 등

## Ⅱ. 日·北 經濟協力の 歴史 및 現況



# 1. 總 說

1945년이래 현재까지 日本과 北韓간에는 國交가 없는 「非正常 關係」가 지속되고 있다. 양국간의 人的·物的交流은 극히 제한된 형태로만 이루어져, 그 규모는 보잘것 없는 수준이다.

91년 輸出入을 합한 兩國間 무역액은 불과 5億달러 정도인데, 이는 韓日 貿易額에 비하면 2%에도 미달한다. 또 兩國의 經濟規模는 물론 그 격차가 벌어져 日本의 총 GNP는 北韓의 약 70배, 무역규모는 약 100배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北韓에 있어 日本은 약 10%를 차지하는 交易國인 반면, 日本에 있어 北韓은 0.1%의 상대에 불과하다.

한편 投資交流에 있어서는 體制의 相異, 相互敵對關係 등으로 인해 철저히 단절되어 왔다. 1984年 北韓의 合營法 制定 이후 지금까지 약 3千萬달러의 對北韓 投資가 기록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가 在日朝鮮人の 投資로서, 순수 日本資本에 의한 投資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이 밖에도 日本은 91년말 현재까지 開途國을 상대로 약 1千億달러<sup>12)</sup> 규모의 政府베이스 經濟協力을 실시해 왔는데, 對北韓 供與實績이 全無함은 물론이다.

이처럼 兩國의 經濟關係가 非正常的, 破行的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世界冷戰과 韓半島의 分斷狀況 때문이었다. 이유야 어쨌든 日·北 經濟交流의 단절로 인해 北韓經濟는 결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90년 9월 평양에서의 「共同宣言」을 계기로 日·北關係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려하고 있다. 92년 4월 현재까지 6차례의 國交正常化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日·北 經濟交流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없다. 日本企業

---

12) 日本側 공식통계상의 숫자임.

들은 국교정상화 회담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對北進出을 위한 基礎調査에 머물고 있다.

本章에서는 日·北 經濟交流의 歷史 및 現況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는 현재 초점이 되고 있는 國交正常化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우선 貿易을 중심으로 최근까지의 經濟交流 歷史를 살펴 본 후, 投資交流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本稿에서는 日·北 貿易의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목적과 별 관련이 없다는 판단하에 생략기로 한다.

## 2. 日·北 貿易의 歷史 및 最近動向

### 〈日·北 貿易의 開始〉

1953년 한국전쟁의 종결을 계기로 日本에서는 對中國·北韓 貿易을 개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54년 9월, 일본의 平和委員會 代表團이 평양을 방문, 히라노(平野義太郎)代表가 양국간 경제교류를 제안했는데, 이것이 경제교류면에서의 첫 접촉으로 기록되어 있다.

55년초, 당시의 하토야마(鳩山一郎)수상은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위한 회담을 열 용의를 표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북한측은 南日의상이 國交正常化 提案을 담은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했다.<sup>13)</sup> 이를 계기로 민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55년 5월에는 北京에서 東工物産 등 日本측의 3개 商社와 북한측의 朝鮮貿易會社間에 최초의 貿易協定書가 조인되었다. 同 協定書는 국교가 없는 상황을 고려, 바터去來를 원칙으로 하되 尙차 清算決濟方式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고 있다.

---

13) 이 성명을 양국간 최초의 국교정상화 제안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후 여러 접촉경로를 통해 「日朝貿易에 관한 議事錄」, 「日朝貿易에 관한 談話緣」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日本에서는 商社들이 중심이 되어 日朝貿易會를 설립하였는데 이 기구는 지금까지도 日本側의 對北貿易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次官會議 決定과 第3國 貿易〉

한국정부의 강력한 항의, 국내 左派세력에 대한 견제 등을 이유로 일본정부는 55년 10월 各省 次官會議를 열고 대북무역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日·北間의 직접교역은 불가능해졌으며,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中國 大連港을 통한 第3國 貿易이었다. 56년 9월 북한의 무연탄 3千톤을 실은 배가 中國 大連港을 출발, 처음으로 日本에 入港하였다.

57년들어 中國을 경유한 第3國 貿易이 급속히 확대되어 거래액은 400萬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58년 5월 나가사키(長崎)의 中國 國旗事件<sup>14)</sup>이 발생, 日·北 貿易은 日·中 貿易의 중단과 더불어 막을 내리고, 이에 대신해 홍콩경유의 거래가 시작되었다. 그러던중 日本정부는 59년 12월, 북한이외의 지역에서 결제하는 조건하에 對북한 수출에 한해서는 直送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북한으로부터의 輸入物資에 대해서는 여전히 直輸入이 금지되었다.

60년 한국과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면서<sup>15)</sup> 日·北 貿易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이윽고 61년 4월 일본정부는 北韓을 강제바터地域으로 지정, 直去來를 용인하기에 이르렀다.

14) 나가사키에서 열린 국제우표 전람회장에 게양된 중국 국기를 일본의 우익청년이 끌어내린 사건

15) 한국(이승만 → 민주당 장면), 일본(기시 → 이케다)

## 〈直交易〉

直交易의 용인을 계기로 거래규모는 서서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對北 貿易은 正常去來에 비해 아직도 갖가지 장벽이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強制바터地域 지정에 따른 直接決濟의 금지와 북한측 貿易·技術者의 入國禁止가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日朝貿易會를 중심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로비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前者에 대해서는 62년 11월, 일본정부가 「輸出入貿易管理規則」의 改正을 통해 북한을 강제바터지역에서 제외하는 한편, 「標準決濟方式에 대한 規則」을 폐지함으로써 標準決濟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人的交流에 대해서는 스포츠관계자의 入國이 허가되는등의 진전은 있었으나 무역·기술자의 입국은 여전히 거부되었다. 이 밖에도 1964년 2월, 協邦通商의 鋼材輸出에 대해 1년만기 延拂輸出이 인정된 것을 시작으로 12월에는 2년만기, 65년 12월에는 3년만기가 인정되었다. 다만 輸出入銀行의 용자는 不許되었다.<sup>16)</sup>

## 〈日·北 貿易의 번성〉

70년대 들어 日·北 貿易은 번성기를 맞이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북한이 71년부터 제2차 6개년계획을 시작, 일본으로부터의 機械·設備 도입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점, 둘째로는 美·中 관계개선 및 南北공동성명 등 日·北 貿易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71년 11월, 일본에서는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이 결성되고, 72년에는 同연맹과 日朝貿易會가 평양에서 북한측과 「무역촉진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에 근거해 73년 2월에는 東京에 朝日輸出入商社<sup>17)</sup>가 설립되었다. 또 72년 10월에는 朝

16) 輸銀용자에 대해서는 本橋 I章 1節을 참조

17) 同 合意書에서는 장래 상호 무역대표부를 설치키로 합의했는데, 이에 따라 정식 무역대표부가 생길 때까지의 잠정적 기구



鮮國際貿易促進委員會가 무역업계로서는 최초로 일본 입국이 허가되어 일본 제국의 환대를 받았다.

延拂輸出도 72년 12월에는 6년만기(化學 플랜트), 73년 7월에는 8년만기(시멘트 플랜트)가 허가되었다. 73년 10월에는 최대 현안이던 輸銀의 용자가 타월製造플랜트에 대해 허가되었다.

### 〈責務支拂遲延事態의 발생과 延期交渉〉

70年代初半 비약적으로 증가하던 日·北 貿易에 재동이 걸렸다. 74부터 북한측의 支拂遲延事態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은 經濟開發計劃에 따른 서구제국으로부터의 플랜트 輸入이 급증하고 있었다. 그런데 73년의 석유사태로 공산품 가격이 폭등한데 반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非鐵金屬 가격이 급락, 外貨사정이 극도로 惡化되었던 것이다.

76년말 약 800억엔에 달하는 채무를 둘러싸고 평양에서 日本側 대표단과 朝鮮貿易銀行 사이에 채무연기합의<sup>18)</sup>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77년 6월 재차 지불지연 사태가 발생, 79년 8월 東京에서 일본측의 요구를 북한측이 거의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지불연기 합의가 달성되었다.<sup>19)</sup> 일본에서는 三井物産을 중심으로 한 채권자들이 북측과의 협력창구로서 東아시아貿易研究會<sup>20)</sup>를 설립했다.

79년의 채무연기 합의이래 83년초에 걸쳐 비교적 순조롭게 채무지불이 이행되어 日·北 貿易도 다시 활기를 보였다. 그러나 日本측의 플랜트 輸出이 급증하는 관계로 북한의 대일무역수지 적자폭은 날로 확대되어, 80년대에는 2億달러 수준에 육박했다. 이는 북한의 대일 수출액을 넘는 액수였다. 결국 북한의 외화사정은 개선될 전망이 없어졌으며 83년 다시 일본측에 채무기일연기를 요청하지 않

18) 第1次 채무연기

19) 第2次 채무연기

20) 同기구는 현재 日朝貿易會와 더불어 對北經濟交流를 추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을 수 없었다.<sup>21)</sup>

한편 83년 10월에는 량군사태가 발생, 일본정부가 대북한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북한측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84년 1월, 채무지불을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서 채무문제는 미궁에 빠진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日本 通産省은 86년 10월, 중소수출업자를 중심으로 약 300억엔의 보험금을 지급했다.<sup>22)</sup> 이때부터 이 문제는 결국 양국의 국교정상화시에 전후처리문제와 더불어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 〈日·北 貿易의 쇠퇴와 朝朝貿易〉

84년의 채무이행 중지선언에 이어 85년의 후지산마루(富士山丸)사건, 87년의 KAL機 폭파사건 등 연이은 정치적 사건들로 日·北 貿易은 최근까지도 축소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日本商社들은 代金回収에 불안을 느껴 對北 輸出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었다. 通産省의 貿易保險과 輸出入銀行의 融資도 전면중지된 상태이다. 한편 對北輸入도 北韓商品의 質, 納期 등의 문제로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日本人들이 對北貿易에서 손을 떼는데 따른 공백을 메우며 増加한 것이 在日 朝鮮人에 의한 거래이다.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日·北 貿易의 약 90%가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sup>23)</sup> 이런 현상을 두고 日本에서는 「朝朝貿易」이라 부른다. 이처럼 在日朝鮮人の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① 북한당국이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在日朝鮮人과의 거래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② 85년의 合營法 실시 이후의 在日조선인에 의한 合作事業과 관련한 輸出入이 증

21) 第3次 채무연기

22) 이로 인해 대북채무의 실제적인 권리자는 日本政府가 되었음.

단, 日本政府와 保險금을 지급받은 상사들과의 사이에는 「輸出代金 회수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약속이 있었음.

23) 展開みせむか 日朝關係, 「現代 エリア」

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90년대중반이래의 日·北 貿易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는 소폭이나마 北韓측의 黑字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측이 外貨事情上 엄격한 수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더해 日本商社들이 對北輸出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國交正常化交渉이후의 움직임〉

90년들어 兩國의 國交正常化交渉이 개시되면서 日·北 貿易面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올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교섭상황은 당초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불투명한 요인이 많이 남아 있는 탓에 日本企業들은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데 머물고 있다.

1991년도의 貿易去來 實績을 보면 日本의 對北輸出이 30,245百萬엔, 輸入이 38,284百萬엔으로서 交易規模는 90년에 비해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움직임으로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開發輸入問題인데 이는 다음 節에서 서술한다.

끝으로 日·北 貿易은 國交正常化가 매듭지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왜냐하면 가장 큰 장애요인인 북한의 外貨不足, 대일 채무와 대금회수 불안문제가 현재로선 해결될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국교정상화가 실현되어 어떤 형태로든 대일채무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韓銀의 輸出融資, 通産省의 貿易保險이 재개되고 北韓輸入品에 대한 差別關稅가 폐지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 國交正常化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北韓經濟상태로는 貿易規模가 擴大되는데 한계가 있다. 要는 外國資本(韓國, 日本등)이 들어가 輸出競爭力이 있는 상품을 北韓內에서 製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 3. 日·北 投資交流

#### (1) 概 要

1984년도에 100億달러를 돌파한 日本의 對世界直接投資는 이후 安高, 貿易收支黑字幅의 擴大를 배경으로 급속히 팽창, 89년도에는 약 675億달러에 달했다. 90년도에는 569億달러로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적어도 今世紀中 日本이 세계 제 1의 대외직접투자국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91년 3월현재 日本의 對世界直接投資 누계는 63,236件, 3,108億달러인데 이중 對北韓投資는 고작 16件, 29百萬달러에 불과하다.<sup>24)</sup> 件數로는 0.025%, 金額으로는 0.009% 정도인 셈이다. 더우기 주목할 점은 이들 모두가 在日朝鮮人에 의한 투자라는 사실이다.

北韓은 1984년 9월 合營法을 제정한 이래 外國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는데 힘써 왔다. 북한측의 설명<sup>25)</sup>으로는 91년 9월현재 북한내에 설립된 合作會社는 약 100여社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在日朝鮮人의 투자로서 그 金額은 130億엔<sup>26)</sup> 정도라고 한다.

현단계에서 볼 때 北韓의 合營法은 이들 在日朝鮮人의 투자실적을 제외하곤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등 西歐資本은 거의 대부분 철수했으며 日本企業들은 처음부터 철저히 외면해 왔다. 合營法이 왜 실패했고, 日本企業의 對北投資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에 대한 展望 등은 IV의 國交正常化 부분

24) 참고로 對韓투자는 1,847件, 4,138百萬달러(91년 3월 현재)

25) 東亞日報 91. 10. 11

26) 日本側 공식통계는 29百萬달러(약 40억엔)에 불과함

그 차이는 통계작성의 차(소규모 투자, 부동산 투자 등), 신고누락분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임.

에서 논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지적해 둘 점은 北韓黨國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合營法의 기본발상은 北韓의 計劃經濟를 속에 資本主義國家의 資本과 技術만을 받아들일겠다는 것으로 이는 資本과 技術이 움직이는 動因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었다. 최근 북한이 「經濟特區」<sup>27)</sup>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커다란 方向轉換이 아닐 수 없다.

日·北 投資交流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항은 ①開發輸入, ② 두만강유역개발사업(經濟特區)이다. 開發輸入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다룬다. 두만강유역개발사업(특히 나진, 선봉, 청진일대의 경제특구)은 韓國側에서도 관심이 높고, 줄곧 國際會議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새삼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와 관련한 日本側의 분위기에 대해 몇가지 첨부한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日本企業들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고, 싸고 풍부한 노동력<sup>28)</sup>이 있으며 中國 東北3省과 시베리아地域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어렵고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日本企業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면 ① 北韓의 개방에 대한 眞意, ② 한국과 북한의 經濟協力關係라는 두가지일 것이다.

---

27) 정식명칭은 「自由經濟貿易地帶」, 북한은 中國과의 차이를 강조기 위해 「경제특구」란 용어를 기피한다고 함.

28)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日本의 약  $\frac{1}{20}$ 수준

## (2) 開發輸入에 대한 論議

최근 國交正常化交渉 등 양국관계의 변화조짐에 부응해 주목을 받게 된 것이 開發輸入문제이다. 開發輸入이란 간략히 말해 日本企業이 北韓에서 직접 필요한 물건을 생산 또는 加工해서 日本으로 輸入해 간다는 것이다. 당연히 輸入前에 日本側의 投資가 先行되어야 하므로 貿易과 投資가 일체가 된 형태이다.

開發輸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나 日本企業이 북한에 대한 投資자체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못하다가 최근 北韓의 開放政策과 日·北 國交正常化交渉 등 兩國관계의 진전으로 그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北韓은 開發輸入을 日本側에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①債務문제로 곤경에 처한 日·北 貿易을 再活性化하고, ②日本の 資本과 技術을 導入할 수 있으며, ③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輸出이 가능하다는 利点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開發輸入은 日本側에서도 北韓이 지닌 각종 礦物, 農水産物資源에 관심이 높고, 對日債務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호감을 가져왔다.

이런 양측의 이해가 일치해 1991년 4월에는 東아시아貿易研究會와 日朝貿易會가 공동으로 평양에 開發輸入促進미션을 파견한 바 있다. 당시 金達鉉부총리의 發言을 보면 북측의 태도가 지극히 유연해졌으며, 日本으로부터의 資本·技術導入에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알 수 있다.<sup>29)</sup> 주목되는 사항은 「經濟共同委」의 설치,<sup>30)</sup> 外國人 100% 出資認定, 北韓商品 品質問題와 外貨不足에 대한 솔직한 고백 등이다. 北韓측은 日本側에 구체적인 開發輸入 希望對象을 제시했다.

開發輸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례<sup>31)</sup>로는 오사카소재 세멘트輸入商社 린카이

29) 日朝貿易會 「朝鮮側의 開發輸入希望對象」(開發輸入促進先遣團, 報告書)

30) 이는 원래 日本側의 제안사항이었음.

31) KOTRA貿易情報(1991. 4. 1)에 의한 내용이나 현재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臨海)가 北韓의 海州에 약 250억엔을 투입하여 年間 500萬톤의 시멘트를 生産, 日本에 역수입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이것이 실현되면 순수 일본자본으로서는 첫 번째의 對北投資가 되는 셈이며, 規模도 최대이다. 한편 北韓産 철강의 90%를 수입하고 있는 東京所在의 東海商事도 對北投資를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에선 北韓의 鑛山등 資源은 별 經濟的 가치가 없기 때문에 開發輸入도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필자로서는 그 진위여부를 판단키 어렵다.

## (2) 在日朝鮮人の 對北合作投資

### 〈推進過程〉

1984년 合營法の 제정으로부터 현재까지의 合作事業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1986년까지의 준비기로서 北韓측의 각종 法令·制度가 정비되고 兩側의 추진기관이 설치되었다. 85년 3월 合營法施行細則등 관계법령이 제정되었으며 86년 6월에는 조총련내에 總聯合作事業研究會가 발족, 工場見學, 市場調査 등의 준비활동을 벌였다. 86년 10월에는 同研究會와 북한측의 合作事業準備委員會 공동으로 朝鮮國際合作總會社를 설립하는 한편, 11월에는 북한의 政務院傘下에 合作工業部<sup>32)</sup>가 신설되었다.

제2단계는 87년부터 89년까지로서 合作사업이 본격 추진된 시기이다. 86년까지 4건에 불과하던 合意件數가 87년에 26件, 88년 43件, 89년 34件으로 증가했다. 이 사이에 在日朝鮮人の 북한시찰과 北측관계자의 日本訪問을 통한 선전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89년 4월에는 合作으로 朝鮮合作銀行이 설립되어 合作事

32) 1990년 5월 폐지되고 현재는 合作總局이 담당.

業에 관련된 送金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제3단계는 90년이후 현재까지인데 북한측의 자료가 공표되고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조정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는 실제로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측의 많은 문제점들이 露呈되었고, 재일조선인들도 다소 관망자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91년 4월에는 평양에서 최초의 「合作製品展」<sup>33)</sup>이 개최되었는데 69社가 참가했다고 한다.

### 〈實態 및 特徵〉

89년말현재 계약 및 합의건수는 98件으로 그 중 41件이 조업중이라 한다. 총 투자액은 113億엔으로 件當 금액은 1억 6,000만엔이다.

업종별로는 제1차산업이 8件(11.0%), 제2차산업(건설, 전기, 운송포함)이 44件(60.2%), 제3차산업이 21건(28.8%)으로서 2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다만 2차산업이라 하더라도 小規模로 資金回收가 빠르며 초보적인 기술로 가능한 사업이 주류이다. 덧붙여 북한측은 鐵鋼, 電氣, 重化學工業 등의 기간산업에 대한 投資를 장려하고 있으나 在日朝鮮人 資本의 성격상 단독으로는 不可能에 가깝다.

이하 재일조선인의 합작사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일조선인(日本)측이 갖는 資本, 技術的 優位와 北韓측의 低賃勞動力, 土地 등이 결합한 상호보완적 사업이다.

② 재일조선인의 資本이 日本內에서는 주로 3차산업<sup>34)</sup>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對北投資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이는 북한측의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매력은 低賃勞動力에 있기 때문이다.

33) 朝鮮資料月報, 1991. 5.

34) 在日조선인의 日本內 사업은 鴨綠江, 야끼니끄(불고기), 不動產 등이 주류로서 製造業은 거의 없음.



③ 北韓측의 外貨獲得을 위한 사업이 주류이다. 제조업의 경우는 第3圖(주로 日本)수출, 서비스업은 관광객상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④ 소규모로 저급기술 의존형 사업이 주종이다. 北韓측이 자랑하는 최대규모의 투자가 1991년 4월 조업식을 마친 「威興化學合作工場」인데 原鑛石의 처리에서 希土類를 추출·분리까지 일괄생산공정을 갖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日本(혹은 韓國)측에서 보자면 이는 겨우 中小企業수준을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 〈評價와 問題点〉

北韓의 合營法이 당초목표인 西歐(日本포함) 자본과 기술의 도입에는 실패했으나 在日朝鮮人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北韓의 당초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며 合作企業의 경영실태도 극히 저조하다는 점에서 볼 때 그 한계는 거의 명백하다.

현재 합작사업중 代表的인 성공例로 꼽히는 것은 신사복 제조업체인 모란봉合作會社, 平壤피아노合作會社 등이다. 특히 모란봉合作會社는 日本 및 한국의 매스컴에서도 수차례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보기도문 성공을 거두었다. 일본에서 최신 設備(재봉틀등), 원단 등을 북한에 가져와 신사복 등을 제조해 다시 OEM方式으로 日本의 양판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90년에는 신사복 15만벌, 브라우스 7만벌, 점퍼 6만벌을 수출했다. 품질도 우수해 최근에는 高級品의 주문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평양피아노는 東京의 朝鮮大學校출신 동창생 4명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했다고 전해진다. 年產 1,500~2,000대의 피아노를 제조해 PACO(平壤악기컴퍼니)의 상표로 日本에서 판매한다.

그런데 이처럼 성공한 例는 오히려 例外的이며 合作事業의 상당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재일조선인의 투자라

서는 아니며 北韓이 對外的으로 갖고 있는 弱點 그 자체에서 연유한다. 즉 體制의 경직성, 市場原理의 不在, 社會간접자본의 未備, 經營能力의 결여 등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日·北 關係를 전망하는 데서 자세히 언급키로 한다.

덧붙여 앞서의 成功例는 분명히 앞으로 전개될 南北經濟協力, 日·北 經濟協力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설<sup>35)</sup>에 의하면 두 회사는 모두 처음부터 북한측의 경영참가를 극력 억제하고 在日朝鮮人이 거의 모든 경영권을 관장했는데, 이것이 성공요인중의 하나라고 한다.

#### 〈在日朝鮮人 投資의 意味〉

재일조선인의 투자가 북한경제에 그나마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在日朝鮮人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국히 제한된 것일 수 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두만강유역개발등 대규모투자<sup>36)</sup>에 이르면 在日朝鮮人의 존재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이 진전되면 在日朝鮮人 資本과 韓國中小企業 資本은 심각한 競爭關係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또 日·北關係의 진전여하에 따라서는 在日僑胞社會 자체가 대대적으로는 再編될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재일조선인의 대북투자는 北韓의 開放化 初期에 하나의 試金石 역할을 했다는 점, 在日朝鮮人 社會의 북한에 대한 조국애가 담긴 사업이었다는 점 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5) 展開みせるか 日朝關係, 「現代 エリア」

36)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대 3個港에 필요한 資金만도 수십억달러 수준에 달할 것임.

### Ⅲ. 日·北 國交正常化會談과 관련하여



# 1. 國交正常化會談에 이르기까지

日本과 北韓의 國交正常화가 처음 제안된 것은 1955년 5월 25일 북한의 南日 외상이 발표한 對日聲明에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다른 사회제도를 갖는 모든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友好關係를 가질려는 모든 국가들과 正常的인 關係를 수립할 용의를 갖고 있으며……」

이로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日·北關係는 굳게 닫혀진 채 세계냉전의 종말을 겪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교정상화 교섭의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은 90년 9월 28일 평양에서 발표된 「自民黨, 社會黨, 勞動黨 共同宣言」이다. 同宣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89년 12월의 몰타선언으로 상징되는 美·蘇냉전의 종결, 「7.7선언」과 諸東歐國과의 國交樹立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北方政策등, 日·北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日本政府는 88년 9월 16일에 KAL기 폭파사건을 이유로 실시하던 대북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긴 하였으나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의 눈부신 외교성공으로 인해 점점 고립되어 가는 북한정권에 도움이 손을 뻗친 것이 日本社會黨, 중심인물은 委員長 타나베(田邊誠)였다.<sup>37)</sup> 그는 89년 11월 北京에서 許鎔書記(당시)를 만나 양국관계 개선의 방법을 논의한 결과, 「自民黨의 집행부가 아니면서 自民黨을 제압할 수 있는 인물을 단장으로」 방북해 달라는 북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귀국후 自民黨의 실력자이자 친분이 두터운 가네마루(金丸信)에게 이 뜻을 전달, 승락을 받는다. 이어 가네마루의 訪北을 위한 북측과의 비밀 접촉이 이루어지고 90년 4월 10일에는 가네마루가 訪北의사를 공식으로 표명한

37)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는, 「對談」いま 一層の拍車を, 臨時増刊 世界. 日朝關係 참조.

다. 이어 7월 20일 社會黨代表團(久保부위원장이 단장)이 訪北, ① 自民·社會兩黨 대표단이 9월에 訪北, 北韓 勞動黨과 三黨共同宣言을 발표한다. ② 第18富山丸의 紅粉, 栗浦 2명을 10月中旬에 석방, 귀국시킨다.<sup>38)</sup> ③ 이후 곧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교섭을 개시한다는 사항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日本政府(外務省)은 北韓과의 관계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가네마루의 訪北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가네마루가 한 외무성 고관에게 「돌대加里, 이 바보」라고 질책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9월 24日 예정대로 가네마루·타나베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自民·社會兩黨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 최종일인 28日, 북측의 金容淳서기와의 3人명의로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공동선언의 내용은 대체로 세인의 예상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으나 제1조에 들어있는 「戰後 45년간 조선인민이 입은 손실」이란 문구가 日本뿐만 아니라 韓國, 美國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日本 外務省은 곧 戰後 45년간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내에서도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10月8日 가네마루는 한국 청와대로 盧대통령을 방문, 이에 대해 해명하고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日朝關係개선에 따른 한국측의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11월 3~4日 북경에서의 日·北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1차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2월 15~17日 제3차예비회담을 예비회담에서 本會談의 議題 및 日程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91년 1월 30~31日 양일간 평양에서의 제1차 본회담을 시작으로 92년 4월 현재 까지 6차례의 본회담이 개최되었다.<sup>39)</sup>

38) 두 사람은 90년 10월 11日 일본으로 송환되었음.

39) 6차회담시(92.1.30~2.1, 北京) 양측은 3月未경 제7차 회담을 열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4월의 金日成생일관련 행사 등으로 4월말 현재까지 일정이 결정되지 않고 있음.

## 2. 兩側의 位相과 協商力

현재 국교정상화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양국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도 표화해 본 것이 <表 Ⅲ-1>이다.

<表 Ⅲ-1> 兩國의 目標와 協商力

		北 韓	日 本
목 표	단 기	보상금등	戰後處理終結
	중 기	經濟協力	東아시아경제권등
	장 기	체제유지	아시아질서재편
협 상 카 드	단 기	核, 植民地	經濟力
	중 기	地理的 利点	政治力
	장 기		軍事力

우선 兩國이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으려는 목표를 보자. 북한측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보상금을 통해 진퇴양난에 있는 경제에 캄플주사를 놓으려 한다. 이를 계기로 日本 및 西歐로부터 資本·技術을 도입해 經濟活性化를 도모하고 長期的으로는 政權安定 및 체제유지를 노리고 있다. 한편 日本으로서는 北韓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지막 남은 戰後處理問題가 종결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東아시아經濟權 구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美에 대신한 日주도의 아시아질서를 형성코자 할 것이다. 한편

양측이 사용할 수 있는 협상카드는 어떤가. 북한은 현재 영변에 핵 재처리시설을 건설중이고, 美 CIA보고에 의하면 금후 2년내에 핵무기제조에 성공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 만일 북한이 南北對話 등을 단절하고 고립노선을 택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는 日本에 있어서도 커다란 위협임에 틀림없다. 또 北韓은 戰後 일관해서 反帝國主義 노선을 견지해 왔으며 民族學校, 金融事業 등을 통해 在日朝鮮人사회에 깊숙히 관여해 왔다. 이같은 사실은 日本의 과거 植民地 支配에 대한 북한의 도덕적 우월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 주고 있다. 또 중기적으로는 北韓이 갖는 지리적 利點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日本과 中國東北地方을 잇는 航路, 海路의 요충일 뿐만 아니라 東海(日本海)地域 안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또 북한에는 2,300萬의 우수하고 값싼 노동력이 존재한다. 經濟面에서 보더라도 日本의 海外生産基地로서는 最適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같은 利點은 어디까지나 北韓體制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前提下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東獨이 붕괴 하듯 北韓이 하루아침에 붕괴될 개연성이 높다면 日本은 차라리 그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국교정상화는 해서 일단 戰後처리는 종결시키되 본격적인 정치·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한편 日本이 갖고 있는 협상카드는 자명하다. 우선은 세계 제1의 자본, 기술을 보유한 경제대국이다. 또 중기적으로는 냉전종결과 더불어 日本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신장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머지않아 미국이상의 발언력을 갖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日本의 군사력이 아시아의 질서를 담보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다.

### 〈國交正常化의 全體的인 귀결〉

이상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으려는 목표와 협상카드를 별도로 살펴 보았는데 이를 토대로 협상결과를 예측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부분에 있어 북한측이 일본측에 굴복에 가까운 타협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日·北 國交正常化交渉에 있어 日本의 입장이란 60年代 초반 韓日교섭때보다도 한층 日本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단적으로 표현해 「시간은 일본편」인 셈이다.

日本政府는 현재 시간을 끄는 작전을 쓰고 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核査察문제라는 최대장애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북한을 좀더 궁지에 몰아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① 북한정권 및 체제가 과연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가 불투명하고, ② 남북대화의 진전등을 통해 한국의 생각을 읽어 둘 필요가 있으며, ③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당장의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이다.

### 3. 事案別 主張 및 展望

현재 국교정상화교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은 제3차 예비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第1議題：日·北 국교정상화에 관한 基本問題

第2議題：日·北 국교정상화에 수반된 경제적 諸問題

第3議題：日·北 국교정상화에 관련된 國際問題

第4議題：기타 쌍방이 관심을 갖는 諸問題(在日朝鮮人の 法的 地位, 在北日本人配偶者 등)

제1의 기본문제란 植民地支配 청산과 양국의 관할권문제이고 제2의 경제적 諸 문제란 보상금, 제3의 국제문제란 한국, 미국 등 관련국에 관한 문제와 日本側이 제기한 核査察문제가 포함된다. 제4의제는 「쌍방이 관심을 갖는」이란 단서가 불

은 諸問題로서 在日朝鮮人の 法的 地位와 在北日本人 配偶者의 고향방문 문제는 쌍방이 의제로 할 것을 합의했으나 제3차 회의부터 日本측이 소위 「李恩惠」문제를 제기해, 북한측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國交正常化 本會談이 시작될 당시 양측의 上記 4의제에 대한 주장 및 대립점을 정리하면 <表 Ⅲ-2>와 같다.

제1차회담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核査察 문제이다. 91년 12월 남북간의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sup>40)</sup>」이 발표되었으며 92년 1월 30일 북한은 IAEA와 保障措置(核査察)에 조인, 4월 10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되었다.<sup>41)</sup> 현재는 IAEA와는 별도로 南北高位級會談 등을 통해 南北間의 相互 核査察 일정이 논의되고 있는 한편, 금년 6월중에는 IAEA의 핵사찰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처럼 日本이 國交正常化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핵사찰문제에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南北間의 상호사찰 일정이 정해진 상태도 아니고, 또 최대쟁점인 영변의 핵재처리시설에 대해서는 北韓이 IAEA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다. 핵사찰문제는 보고의 주제는 아니므로 이 정도에 그치고, 이하에서는 經濟問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2의제인 經濟問題는 성격상 제1의제인 基本問題와 분리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45년이전 상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戰爭賠償인가, 請求權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表 Ⅲ-2>에서 밝혔듯이 북한도 처음 日本과 交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戰爭賠償金도 요구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제5차회담(91년 11월 18~20일, 北京)부터 북한측은 交戰상태였다는 입장에서 후퇴했다. 당시 田仁徹<sup>42)</sup> 단장은 朝日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民間人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라며 전쟁배상이 아닌 민간피해보상으로 후퇴했다.

40) 이 선언전 美國은 한국내의 핵을 철거

41) 이후 4월 14일에는 IAEA에 보장조치협정에 근거한 冒頭報告書를 제출했음.

42) 田단장은 92년 초 病死.

후임단장 李三魯(7차회담부터)

〈表 Ⅲ-2〉 제 1, 2차 회담당시의 양측의 주장과 대립점

	北 韓	日 本
基本問題 (植民地, 管轄權)	<p>북한 人民에 입힌 피해와 손실에 대해, 日本의 정부 최고책임자가 사죄해야 함.</p> <p>공식사죄한 내용을 외교관계 설정을 위한 公式서류에 明記할 것. 日本이 舊韓國과 조인한 모든 조약과 協定은 불법이고 또 무효임을 선언할 것.</p> <p>외교관계를 수립함에 있어 管轄權까지는 의논하지 말고 서로 주권을 인정하면 된다(하나의 朝鮮)</p>	<p>과거 한 때 불행한 관계가 있었음은 유감이다. 하지만 한일합방조약 등은 당시로서는 合法的으로 체결되었다.</p> <p>日·北 국교정상화는 한반도의 휴전선 북쪽을 實效支配하는 北韓과의 정상화다.</p> <p>북한이 남쪽의 관할권까지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p>
經濟問題 (賠償, 請求權)	<p>45년 이전 우리와 日本間에는 交戰상태였으므로 戰爭배상과 財産請求權 두가지를 요구한다.</p> <p>日本은 침략과 점령이란 不法下에 생긴 재산이므로 청구권이 없다.</p> <p>전후보상에 대해서는 日本이 한반도분단에 책임이 있고 6.25전쟁시 미국의 보급·수리·공격기지 역할을 담당,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 후에도 계속 적대정책을 취해 왔다.</p>	<p>日本과 북한은 交戰상태가 아니었다. 賠償, 補償이란 개념은 인정할 수 없다.</p> <p>財産請求權의 관점에서 논의하자.</p> <p>전후45년의 보상에 대해서는 政黨間의 합의이지 日本政府를 구속하지 못한다.</p> <p>6.25전쟁시 日本의 행동은 UN 安保理 결정에 기초한 것이다.</p>

	北 韓	日 本
國際問題 (核査察)	사찰문제는 日本과 얘기할 성질 의 것이 아니다. 핵무기를 개발 할 意思도 能力도 없다. 핵사찰 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美國의 核不使用 약속이 필요하다. 南쪽 에 있는 美國의 核과 동시사찰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北·美문 제다. 일본은 중개역할을 해달라	핵무기 개발은 日本과 국제사회 에 커다란 위협이다. IAEA협정을 즉각 체결하고 최 단시일내에 무조건 사찰에 응하 라
諸問題 (재일조선인 법적지위, 재북일본인 배우자 고향 방문)	在日조선인의 국적을 인정하고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 지문, 형벌을 폐지하라. 민족교육의 권리를 인정·지원해라	조총련 적대정책을 쓴 일이 없 다. 재일조선인의 대우개선에 노력하겠다.

資料：朝日新聞등.

5차회담 이후 때마침 터져나온 것이 소위 정신대(日本에서는 從軍慰安婦)문제였는데 북한은 제6차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 田단장은 「從軍慰安婦는 물론이고 강제연행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南朝鮮人民에게도 해야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sup>43)</sup> 그러나 북한은 이미 당초입장에서 한걸음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회담에서는 더욱 유연한 자세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

한편 日本의 입장은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64년의 「韓日協定」테두리내에서 처

43) 이는 日本에서 「종군위안부문제에 南北연대」라는 식으로 크게 보도되었음. 일본인에 있어서는 예상은 했을지 모르나 막상 들을 땀 쇼킹한 이야기였다고 생각됨.

리한다는 것이다. 즉 韓日合併條約 등은 당시로서는 合法的이었고 日本은 賠償義務가 없다. 상호 財産請求權만 있는데 이를 일일이 立證·計算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韓國, 北韓의 청구권금액은 日本보다 결코 많지 않다. 따라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獨立축하금조로 經濟協力을 제공하겠다는 줄거리다.

물론 아직까지 日本側은 공식석상에서 이런 뜻을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극비리에 경제 협력자금의 규모를 책정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앞으로 우여곡절은 있을망정, 이 문제는 결국 日本側의 의도대로 결말이 날 것이다. 한일회담시의 「金鍾必—大平메모」처럼 이번에도 「金日成—金丸密約」이 무대뒤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經濟協力資金의 규모이다.

이를 예측함에 있어 다음 2가지가 참조사항이다. 첫째는 韓國에 제공한 금액이고, 둘째는 북한만의 「전후 45년」이다. 우선 前者는 無償 3億달러와 有償協力 2億달러, 民間차관 1億달러였다. 後者에 대해서는 가네마루氏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참고가 된다.

「<sup>44)</sup>이 45년간의 空白시대도 賠償의 대상, 보상의 대상으로 하라는 주장에 대해 (日本 外務省을 위시한 반대파들은) 이견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조선반도라고 한다면 한국에 지불한 보상이라는 것, 즉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그 돈을 일본이 맡고 있었다는 계산이 된다. 따라서 그 勘定<sup>45)</sup>에 색을 칠하는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 日本 外務省사람들이 「色이란 뭐냐」라고들 하는데 「色이란 플러스 알파」다. 「플러스 알파는 뭐냐」고 하길래 「…中略…金利랄 수는 없고 利子라도 붙이면 어떤가」라고 대답하니 다시 「이자는 뭘니까」라고 묻는다. 「그 정도를 알아 둔지 못한다면 얘기는 여기서 끝이다」라

44) 「對談」いま 一層の拍車を, 臨時増刊世界, 日朝關係 참조, 번역은 다소 의역임.

45) 勘定은 금전출납의 계산, 회계, 예산 고려 등의 뜻.

고 했다.

이상에서 보듯 「戰後 45년간에 대한 補償」문제는 利子計算方法으로 타협될 것이다. 즉 日本政府가 北韓측의 분단책임, 6.25전쟁에서의 책임 등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결국 한일협정 때의 협력자금을 원금으로 국교정상화 시점까지의 利子を 계산할 때 보다 후하게 처리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다.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고 어림잡아 계산한다면 대략 總額 40億달러 전후의 政府資金과 10億달러 전후의 民間차관이 공여될 공산이 크다.<sup>46)</sup> 政府資金은 無償이 15億, 基金의 低金利차관이 20億, 輸銀차관이 5億달러 정도일 것이다. 실제로 엄격히 金利를 적용해 계산한다면 총계 약 30億달러 수준인데 플러스알파로서 20億달러 정도가 추가되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 4. 國交正常化의 時期

언제 日·北 國交正常化가 실현될 것인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는 일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日字의 제시 등은 피하기로 하고, 필자 개인의 소감만을 적기로 한다.

우선 지금같이 국교정상화 교섭이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日本이 지연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하루속히 회담을 성사시키고 싶어하며, 경제협력자금이 충분하면 기본문제의 해결에는 유연한 자세로 대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북한은 3차회담(91년 5월, 北京)에서 제1의제인 基本問題만을 먼저 논의, 여기서 합의되면 外交關係를 우선 수립하고, 뒤이어 배상 및 핵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일본에 거절당한 일이 있다. 이는 제1문제와 제2문

46) 日本 民間研究所의 예측도 대체로 이선과 일치.

제가 분리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핵문제를 피해 하루빨리 日本의 資本을 끌어들이고 싶다는 계산일 것이다. 한편 日本側은 처음부터 核문제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채 일보의 후회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필자 개인의 견해로는 물론 核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日本政府가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sup>47)</sup>) 보다 정확히는 아직도 日本政府의 對韓半島戰略이 流動的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要는 南北關係의 향배이다. 즉 한국정부가 북한을 흡수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상당기간 共存政策을 취할 것인지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는 일본정부도 對北韓政策 방향설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韓國과 中國의 國交正常化가 실현되는 경우, 日·北 국교정상화도 가속화될 것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80년대 크로스承認이 논의되던 때와는 상황이 너무 변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주도권은 한국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한국이 共存政策을 쓴다면 문제는 보다 간명해질 것이다. 日本은 한국과의 묵시적인 합의하에 對北進出을 서두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흡수통일전략을 쓴다면 日本으로서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日本은 모든 일정을 가능한 한 늦추고 싶어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교정상화는 아마도 내년중까지는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국교정상화는 南北關係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

47) 金丸은 북한측으로부터 核문제에 대한 北·美간의 중재역할을 요청받고, 이를 미국측에 전했으나 미국의 반응은 냉담.





## IV. 日本의 對北進出과 우리의 對應

• 1

# 1. 日本의 對北進出 시나리오

## (1) 日本企業

日本電氣(NFC)그룹의 研究所 日本電氣經營시스템總研(東京 品川소재)은 91년 중반부터 對北投資를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91년 9월 담당연구원을 여행객으로 가장시켜 북한에 보내<sup>48)</sup> 通信,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을 조사케 했다. 10月에는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연구소내에서 수차례의 토의를 거쳐 향후 조사계획이 마련되었다.

同社は 세계굴지의 컴퓨터·통신관련 기업그룹이다. 지금까지는 COCOM규제 때문에 對北輸出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또 시장규모가 워낙 작아 별다른 관심도 없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同社가 북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

① 북한은 현재 사회간접자본이 거의 무방비상태다. 앞으로 국교정상화가 실현, 경제협력자금(약 50億달러)이 공여되면 상당부분을 이쪽에 투자치 않을 수 없다. 당장은 경제협력자금에 의한 통신설비수출을 노리고 다음에는 컴퓨터, 전화기 등의 시장에 침투한다.

② 북한이 개방되면 생산거점을 마련한다. 컨트리 리스크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매력있는 생산지이다. 생산된 제품은 상당기간 日本등 第3國으로 수출하지만 東아시아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 지역내외 시장규모도 점점 커질 것이다.

---

48) 日本政府는 91년 4월 1일자로 여권에서 「북조선을 제외함」이란 문구를 삭제, 일반국민의 북한 입국을 자유화했다.

③ 한국은 최대의 잠재력을 가진 경쟁자이다. 앞으로 한국기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한국기업의 북한진출이 늘고 있다. 머지않아 전자·통신업계도 진출할 것이다. 일찍 북한에 거점을 확보해 두는 것이 對韓國企業 전략에도 유리하다.

同社は今年 5月 2~3일 평양에서 열리는 두만강유역개발 평양회의에 일본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금년 3月에는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한국, 중국을 10여일간에 걸쳐 시찰하기도 했다. 중국에는 이미 北京, 天津에 工場을 가동중인데, 정상궤도에 오른지 오래다.

이상은 實話를 토대로 日本企業이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재구성해 본 것이다. 이처럼 아직은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두만강유역만 하더라도 이제 비로소 투자계획안이 입안되고 있는 상태다. 또 가장 큰 장벽은 북한체제의 존속여부다. 경제협력자금을 의한 수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투자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설령 북한 정부의 투자보호 약속을 1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루마니아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東獨처럼 남쪽에 흡수통합되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다.

「한국정부가 보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이는 日朝貿易會의 한 사무국직원이 필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만일 북쪽이 몰수조치를 취하거나, 체제가 무너져 남쪽에 흡수되는 경우, 기존의 일본투자를 한국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바램섞인 물음이었다. 이야말로 日本企業의 對北進出에 있어 최대의 딜레마이다.

그러나 韓國政府가 투자보증을 선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이야기다.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는 경우, 한국이 진정으로 북한경제의 회생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한국과의 合作(南·北·日)投資에 대해서만 한국정부가 투자보험을 허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심한 제한조치가 따른다는 전제하에...

## (2) 日本政府의 支援政策

日·北 國交正常화가 실현됨을 계기로 약 50億달러에 달하는 經濟協力資金이 북한에 공여될 것이다. 日本政府는 이 중 5億달러정도를 債務辨濟條件으로 하는 대신 현재 중단되어 있는 輸出保險과 輸銀融資을再開할 것이다. 또 差別關稅(基本稅率)는 자연히 폐지되고 協定稅率이 적용된다.

無償協力資金의 나머지중 상당액과 有償協力資金의 절반이상은 現物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日本企業의 플랜트輸出이 급증할 것이다. 對北韓 貿易港으로서 니이가타(新潟)를 확장할 것이다. 또 賠償과는 별도로 JICA를 통한 기술공여가 실시될 것이다. 北韓의 유학생, 기술자를 연수시키고, 일본기술자를 북한에 파견할 것이다. 東京—평양간 정기항로가 개설됨은 물론이다.

한편 輸銀의 貿易保險중 海外投資保險의 인수조건외 하나로서 북한측에 投資保護協定, 2重課稅防止協定 등을 요구할 것이다.

한편 日本政府는 한국정부에 대해 對北投資에 대한 비공식적인 협상을 원할지고 모른다. 즉 북한의 흡수합병에 대비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측에 투자보호에 대한 언질을 받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는 경제원조가 북한의 군사력증강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보될 것이다.

## (3) 在日朝鮮人

日·北經濟交流가 확대되면 在日朝鮮人의 경제적 입지는 일면 플러스, 일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日本企業은 북한사정에 정통한 在日朝鮮人들을 대리로 세울

가능성도 많다. 특히 日本의 中小企業중에는 在日朝鮮人과의 對北合作投資를 선호할지도 모른다. 또 지금까지의 각종 규제(出入國, 差別關稅, 貿易保險 등)가 철폐됨으로써 얻는 이익도 크다.

그러나 北韓政權과 在日韓國人의 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 日·北 國交가 정상화되고, 南北關係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北韓의 開放化가 진행된다면 在日韓國人, 在日朝鮮人의 구별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北韓정권은 계속해서 朝總聯을 중심으로 在日朝鮮人과의 유대를 강화하려 하겠지만, 머지않아 在日同胞사회내에서 統合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84년 合管法이래 현재까지 在日朝鮮人의 對北投資는 고작 1億달러<sup>49)</sup>에도 못미친다. 日·北 國交正常化를 계기로 이들의 對北投資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規模面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또 在日朝鮮人의 投資業種(특히 製造業)은 韓國 中小企業과 競合關係에 있는 것들이 많다(예를 들어 앞서의 신사복, 피아노). 이런 것들은 북한당국이 在日朝鮮人우대책을 강구할 지도 모른다.

끝으로 民團을 중심으로 한 在日韓國人의 움직임인데 이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항이 없다. 만일 이들의 對北投資 또는 貿易이 실현된다면 이는 이미 在日同胞社會의 統合을 의미한다. 한국에는 아직도 保安法이 엄존하고 있다. 在日同胞사회는 오히려 韓國內보다 이데올로기의 變化에 늦게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특수사정이 있다. 지금 시점에서 在日韓國人이 對北投資 또는 對北貿易을 생각하기엔 장벽이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

---

49) 北韓側 발표, 日本側 統計로는 약 34萬달러

## 2. 政策 提言

### (1) 日·北 國交正常化에 대한 韓國政府의 대응

日·北 國交정상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盧대통령이 金丸에게 전한 5가지 원칙으로 요약된다. 즉 한국으로서는 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전제조건으로서 ① 한국정부와 충분한 사전 상의, ② 남북대화·교류와 연계, ③ 핵사찰 우선, ④ 배상 및 경제협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연결되지 않게, ⑤ 북한의 개방과 노선전환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우려라고는 생각되나 한국정부는 앞서 지적한 일본정부의 딜레마에 대해 다소 인식이 부족한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다. 한국내에서는 日本이 북한을 지원해 Divide and Rule 전략을 쓰려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이는 다소 감정적인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역시 日本은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또 日本이 무리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모험을 펼칠 인센티브는 많지 않다.

앞의 5항목은 대체로 일본의 Divide and Rule 전략에 대한 우려 표명처럼 들린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日·北 國交正常化의 中介者 역할을 담당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여겨진다. 한국정부는 아직도 북한의 군사력을 들고 나오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지 않을까. 오히려 남북고위급회담 등에서 북한이 핵사찰을 전면·즉각 수용하는 대신 이쪽에서는 일방적인 군축계획을 발표하는 식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정부의 基本方針은 南北對話로서 日·北 國交正常化회담을 리드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작년말의 「合意書」와 「非核化共同宣言」은 실로 의미가 크다. 日

본이 내세우는 核문제는 어쩌면 핑계에 불과하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남북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려있다. 「核問題, 軍事力問題 등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북한경제를 희생시키는데 힘을 써달라」라고 하면 어떨까.

다만 이상의 얘기는 한국이 통일문제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냉전은 끝났고, 북한은 패자다. 승패가 분명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크다. 상. 당시간 통일시기를 늦추더라도 우선 북한경제를 희생시키는 작업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 (2) 經濟問題에 대한 대응방안

日·北 國交正常化로 인해 예상되는 첫번째 문제는 배상금(경제협력)에 대한 대응책이다. 일본정부는 배상금 지불을 계기로 우선 日本의 플랜트類, 생필품 등을 수출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북한과 한국산 물자를 공급하는 방안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동의하는 한 日本도 양보치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북한시장에서는 韓日競爭·協力關係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차원의 문제이긴 하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日本企業은 국가리스크를 두려워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내의 분위기는 경제적 타당성을 경시하고 졸속하게 對北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南北合作은 기본적으로 勞動集約的 産業이라야 유리하다. 그러나 勞動集約的 産業이라 하더라도 日本의 最新設備, 設計엔지니어링 등은 한국보다 경쟁력이 세다. 80년대후반 한국경제가 악화된 원인의 하나가 日本과 아세안의 결합이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南·北·日 合作을 장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日本의 資本과 技術, 韓國의 經營, 北韓의 勞動을 결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한국 경제



력만으로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에는 역부족임<sup>50)</sup>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日本의 對北進出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南·北·日 合作事業의 장려이다.

---

50) 소위 통일비용 논의에서 보듯 북한경제를 지금의 남한 경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간접 자본, 공장건설 등에 필요한 자본은 수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다.